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태국
면적	513,120 km ² (자료원 : 태국투자청(BOI), 2018 기준)
수도	방콕
인구	69,182,000 명 (자료원 : IMF, 2018 기준)
민족(인종)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
언어	태국어
종교	불교(94.6%), 이슬람교(4.3%), 기독교 및 천주교(1%), 기타(0.1%)
기후	열대 몬순기후로 3계절로 구분 - 건기: 11월 초~2월 말(섭씨 18~32도) - 혹서기: 3월 초~5월 말(4월이 가장 더움, 28~36도) - 우기: 6월 초~10월 말(소나기 단시간 집중, 25~32도)
국가원수	○ 국왕: 라마 10세(마하 와치랄롱콘, Maha Vajiralongkorn), 2016년 12월 1일 즉위 ○ 총리: 프라윗 찰오차(Prayuth Chanocha), 2014년 8월 25일 29대 총리 취임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58-10-01 (자료원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61-09-01	한국과 태국 간 무역진흥을 위한 협정	
무역전시품면세통관협정	1963-05-01	양국 개최 전시회 물품 면세 통관을 위한 협정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	1967-10-01	양국 방문 및 체류를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의 비자 및 수수료 면제 협정	
항공협정	1968-03-05	한-태 양국 간 운항할 항공기, 편수, 기종 등에 관한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2007-06-29	우리 기업의 태국 진출 또는 태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시, 동일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태국 모두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투자진출 기업이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	
운수소득 면세협정	1981-01-05	태국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 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태국의 영업세를 면제.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 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한국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	

사증면제 협정	1981-12-09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및 태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상대국에 여행 가능	
과학기술 협력협정	1985-08-27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 진흥을 위한 협정	
투자보장협정	1989-09-30	양국간 투자진흥을 위한 협정	
범죄인 인도조약	2001-02-01	양국간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해 수배된 자를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	
해운협정	2002-08-28	양국 항구안에서 상대국의 선박에 대해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	
형사사법공조조약	2005-04-06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요청에 공조할 것을 약속	
태국의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09-09-01	태국의 한-아세안 투자자유화 협정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	2010-01-01	태국의 한-아세안 상품관세 철폐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협정	
수형자이송조약	2012-12-18	상대국 영토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을 복역하기 위해 이 조약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이송 가능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2015-04-06	양국간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	

〈자료원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한국교민 수

20,500 명 (자료원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외교부장관 태국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7월 1일과 2일 태국을 공식 방문하여 브라웃 잔오차 태국 총리 예방, 돈 뿌라뭇 위나이 태국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교부 보도자료-

경제

○ 제1차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2016년 3월 22일 서울에서 태국의 쏜킷 자투시피탁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태국 대표단과 유일 호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은 제1차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하여 양측은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경제-

○ 매경 태국포럼 개최: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태국 방콕에서 '매경 태국포럼'이 개최되어 총 400여명의 우리나라 경제 사절단과 태국 기업인이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매일경제 -

문화

○ 한태수교 60주년 기념 한국문화 종합 홍보행사 개최: 한국문화를 종합 홍보하는 행사인 '안녕 타일랜드, 싸왓디 코리아'가 2018년 10월 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한태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본 행사는 한국의 전통음악, 태권도, 한류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태국 한국문화원-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04	2.48	3.47	4.09	4.12
명목GDP (십억\$)	407.34	401.37	411.84	455.38	490.12
1인당 GDP (PPP, \$)	15,644.56	16,246.45	16,928	17,893.63	19,126.41
정부부채 (% of GDP)	43.34	42.55	41.81	41.88	41.93
물가상승률 (%)	1.9	-0.9	0.19	0.67	0.92
실업률 (%)	0.84	0.89	0.75	0.7	0.7
수출액 (백만\$)	226.62	214.05	214.25	235.25	252.16
수입액 (백만\$)	228	201.89	195.2	223.82	250.53
무역수지 (백만\$)	-1.38	12.16	19.05	11.43	1.63
외환 보유고 (백만\$)	151,501.81	151,503.61	166,387.72	196,367.35	199,537.42
이자율 (%)	2	1.5	1.5	1.5	1.75
환율 (자국통화)	32.48	34.25	35.3	33.94	32.31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의 2018년 11월 19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3.3%를 기록했으며, 2018년 1~3분기 누적 경제성장률은 4.3%를 기록했다.

지출 면에서 2018년 3분기 민간소비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내구재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5.0% 상승했으며 민간 투자 또한 건설 투자 및 기계장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3.9% 증가했다. 생산 부문에서 농업 분야 및 제조 분야는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각각 4.3%, 1.6%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제조업 상승 둔화로 인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감소했고 섬유 산업 또한 둔화됐다. 3분기 건설업은 민간부문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설 증가, 국영기업 위주의 공공 건설 확대로 종합 4.7% 성장하여 전 분기 성장률(2.0%) 대비 2.7%p 상승했다. 2018년 3분기 공장가동률은 66.5%를 기록했다.

태국의 고용은 20분기 만에 농업 및 비농업 분야 모두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1.0%로 8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3분기 공공부채는 GDP의 41.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2억 달러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세로 1.5%를 기록하여 태국 중앙은행의 안정권(1~4%)을 향해 가고 있다. 정책금리는 1.5%로 동결됐다.

경제 전망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에서는 2018년 경제성장률이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7.2%로 예측하고 있다. 총 투자는 민간 및 정부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개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17년 0.9% 대비 대폭 상승한 3.6%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1.1%로 유지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약 6.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5,084,369,426
2	미국	23,967,866,559
3	일본	21,820,597,224
4	말레이시아	12,764,450,064
5	홍콩	12,609,968,146
6	싱가포르	10,454,678,824
7	인도네시아	9,510,286,623
8	오스트레일리아	9,298,849,155
9	베트남	7,888,498,185
10	필리핀	5,868,067,92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3,717,285,274
2	중화인민공화국	23,311,428,604
3	일본	19,763,079,220
4	홍콩	11,641,292,328
5	말레이시아	10,023,281,821
6	오스트레일리아	9,614,248,327
7	베트남	8,764,496,834
8	싱가포르	8,586,949,029
9	인도네시아	7,705,847,644

10	필리핀	5,899,838,967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4,381,248,158
2	중화인민공화국	23,571,962,078
3	일본	20,423,267,894
4	홍콩	11,390,478,814
5	오스트레일리아	10,232,070,063
6	말레이시아	9,540,203,106
7	베트남	9,335,515,368
8	싱가포르	8,039,431,862
9	인도네시아	8,023,946,930
10	필리핀	6,350,686,32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8,498,344,674
2	일본	35,710,527,083
3	미국	14,675,262,281
4	말레이시아	12,745,922,581
5	아랍에미리트	12,718,491,376
6	대한민국	8,540,372,062
7	싱가포르	7,879,010,469
8	사우디아라비아	7,819,848,728
9	인도네시아	7,278,673,572
10	독일	5,913,347,729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0,919,104,555
2	일본	31,134,907,810
3	미국	13,923,311,710
4	말레이시아	11,875,180,286
5	아랍에미리트	8,135,333,146
6	Other Asia, nes	7,503,850,483
7	싱가포르	7,188,977,175
8	대한민국	7,014,827,328
9	인도네시아	6,537,602,707
10	독일	5,518,833,783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2,250,595,872
2	일본	30,861,997,608
3	미국	12,216,909,354
4	말레이시아	10,953,118,359
5	대한민국	7,311,228,884
6	Other Asia, nes	7,169,041,136
7	싱가포르	6,547,706,731
8	인도네시아	6,409,903,748
9	아랍에미리트	6,195,197,405
10	독일	5,893,033,13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847170	기억장치	11,733,602,666
2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7,596,583,742
3	271019	기타	7,443,227,316
4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4,859,097,214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567,294,743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2,971,794,356
7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2,929,647,390
8	870899	기타	2,812,763,661
9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674,630,598
10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2,482,632,346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47170	기억장치	10,943,346,728
2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798,984,148
3	271019	기타	5,427,875,788
4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4,078,187,081
5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544,045,526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253,436,310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3,009,313,877
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865,029,360
9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2,670,861,790
10	870899	기타	2,666,049,817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47170	기억장치	9,846,652,716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046,058,125

3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928,166,169
4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3,789,804,826
5	271019	기타	3,561,510,140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3,454,785,293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068,851,280
8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3,020,758,860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3,016,052,733
10	854239	기타	2,960,083,354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33,216,455,556
2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6,448,444,828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848,009,145
4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24,798,467
5	271121	천연가스	3,539,726,684
6	854290	부분품	3,253,788,845
7	854239	기타	3,183,126,841
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10,076,375
9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946,200,225
10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2,741,183,80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452,130,643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062,505,177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73,098,810

4	732690	기타	3,401,834,980
5	271121	천연가스	3,264,762,147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3,136,677,464
7	854239	기타	2,988,713,756
8	854290	부분품	2,968,368,236
9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799,779,792
10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643,023,280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236,423,147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779,981,617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770,561,468
4	732690	기타	3,357,582,438
5	854239	기타	3,224,139,763
6	854290	부분품	2,979,413,403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974,050,011
8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392,142,091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2,387,931,031
10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140,380,863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7,599	5,345	2,254
2015	6,362	4,854	1,508
2016	6,482	4,563	1,919
2017	7,467	5,205	2,262
2018	6,744	4,739	2,00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32	열연강판	413	1	412
2	2140	합성수지	459	141	317
3	6133	냉연강판	355	17	337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477	393	83
5	6134	아연도강판	283	1	282
6	1336	윤활유	182	71	110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67	107	60
8	2150	합성고무	243	17	226
9	2273	화장품	152	57	94
10	7420	자동차부품	161	108	5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6132	열연강판	400	1	399
2	2140	합성수지	360	121	239
3	6133	냉연강판	325	22	303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322	284	38
5	6134	아연도강판	194	0	194
6	1336	윤활유	173	92	81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65	124	41
8	2150	합성고무	149	10	139
9	2273	화장품	131	45	86
10	7420	자동차부품	120	99	2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477	393	83
2	0158	당류	0	68	-68
3	8132	보조기억장치	38	224	-186
4	0316	파티클보드	0	183	-184
5	0332	천연고무	0	231	-231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2	118	-106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67	107	60
8	2140	합성수지	459	141	317
9	8242	에어컨	1	123	-123
10	7420	자동차부품	161	108	5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22	284	38
2	0158	당류	0	203	-203
3	8132	보조기억장치	5	150	-145
4	0316	파티클보드	0	143	-143

5	0332	천연고무	0	132	-132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2	127	-115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65	124	41
8	2140	합성수지	360	121	239
9	8242	에어컨	1	103	-102
10	7420	자동차부품	120	99	2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SEAN Free Trade Agreement(A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1992-01-28	2003-01-01	2010년부터 태국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단 coffee, potato, cut flower, coconut 등 4개 민감품목은 5% 저율 관세 부과
Thailand-India FTA	태국, 인도	2003-10-09	2004-09-01	과일, 수산물, 보석 등 관세 면제
Thailand-Australia FTA	태국, 호주	2004-07-05	2005-01-01	호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 면제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NZCEP)	태국, 뉴질랜드	2005-04-19	2005-06-01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 관세 면제
Asean-China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중국	2004-11-29	2005-07-20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TEPA)	일본, 태국	2007-04-03	2007-11-01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또는 인하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일본	2008-04-11	2009-06-01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86.17% 관세 면제
Asean-Korea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한국	2009-02-27	2010-01-01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Asean-India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인도	2009-08-13	2010-01-01	2016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관세 면제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0-03-12	2020년까지 전체 상품의 98.80% 관세 면제
Thailand-Peru FTA	태국, 페루	2005-11-19	2011-12-31	전체 상품의 70%에 해당하는 5,962개 품목에 대한 양국 수입관세 면제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2007-08-01	2013-07-01	Fast Track은 2012년 7월 1일 발효
Thailand-Chile FTA	태국, 칠레	2013-10-04	2015-11-05	칠레와 태국 모두 전체 상품의 90%를 즉시 관세인하 품목으로 설정
Asean-Hong Kong FTA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홍콩	2017-11-12	2019-01-01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 예정

〈자료원 :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hailand-EU FTA	태국, EU	2013년 3월 6일 정식 협상 개시,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사쿠데타로 협상 전면 중단, 2017년 12월 EU의 협상 전면 재개 의사 표명	
Thailand-Sri Lanka FTA	태국, 스리랑카	2018년 7월 1차회담 개최, 2018년 12월 각국의 위생표준 및 양허대상 품목에 관한 제 3차 회담 개최 예정, 2020년 타결이 목표	
Thailand-Turkey FTA	태국, 터키	2016년 7월 15일 협상 개시, 2018년 12월 중 제4차 회담 개최 예정이며, 협상 타결은 2019~2020년 중 이루어질 예정	
Thailand-Pakistan FTA	태국, 파키스탄	2015년 FTA 논의 시작, 제10차 회담이 2018년 말 또는 2019년 1분기 중 개최 예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18년 중 협상 최종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RCEP 정상회의'를 통해 2019년 중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	
---	--	--	--

〈자료원 :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방콕포스트, 더 네이션〉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5.11 7305.12 7305.19 7305.20 7305.31 7305.39 7305.90 7306.19 7306.29 7306.30 7306.50 7306.61 7306.69 7306.90	강관	반덤핑(규제중)	2016-01-18
2	7305.31, 7306.31/11/21/40/6 1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반덤핑(규제중)	2015-09-17
3	7208.36/37/38/39/51/52/53/5 4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4-01-30
4	7225.30, 7225.40, 7226.91	합금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2-11-27
5	7210.61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반덤핑(규제중)	2011-07-08
6	7210.70	도색 아연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반덤핑(규제중)	2011-07-08
7	7208, 7211.13/14/19(7208.25,26,27 ,39는제외)	재압연용 열연강판(Flat Hot- 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	반덤핑(규제중)	2002-07-22
8	7219.32/33/34/35, 7220.20	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02-02-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2016년 2월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제품 8가지 품목을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된 제품에는 유사 상표를 가진 위조 제품, 불법 복제품, 물담배, 게임기, 코끼리, 불상, 해외 유물 그리고 카페인 물질이 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 연체동물, 양서류, 산호는 멸종위험동물 국제 무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에 의거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벌목을 방지하기 위해 태국 해외무역부는 2005년부터 딱(Tak)주와 칸짜나부리(Kanchanaburi)주 국경 지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해 왔다. 태국은 또한 질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동물 사체 및 제품의 수입을 식품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태국의 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식품 보관용 세라믹 제품 및 에나멜 제품(HS 코드 6911.10.00, 6912.00.00)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중고 오토바이(HS 코드 8407.31.00, 8714.10.20, 8714.10.90)
- 게임기(HS 코드 9504.30.10, 9504.30.20, 9504.30.90, 9504.90.39, 9504.90.31, 9404.90.92, 9504.90.93)
- 딱, 간짜나부리 국경지대 목재품(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냉장고, 냉수기, 냉동고 및CFCs 물질 사용 냉동고(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고 승용차 차체 및 중고 오토바이 구조물(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고 타이어(HS 코드 4012.11.00 4012.20.10, 4012.12.10, 4012.12.90, 4012.20.21, 4012.20.29, 4012.19.10, 4012.19.20, 4012.20.40, 4012.20.50, 4004.00.00)
- 폐납축전지(HS 코드 8548.10, 8548.90)
- 물담배, 전자물담배 및 전자담배(HS 코드 2403.11.00, 8543.70.90, 9614.00.90)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는 2001년에 제정한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2001)을 통해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NBTC 표준의 주요 목적은 제품 호환성, 통화 품질 보호, 소비자 안전보호, 국가 통신네트워크의 침해 방지 등이다. NBTC는 적합성 평가에 두 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NBTC에서 직접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제품이 적합성 평가의 대상일 경우 수입업자는 NBTC나 외국의 인정된 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시행하고, NBTC에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NBTC는 제품에 부착할 인증표시를 제공하게 된다.

방송통신장비 인증 역시 기타 인증과 동일하게 수입 업체 측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제품의 품목과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입업체 준비서류

- 사업 허가증 (Business License)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태국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목적 기술서(Letter of purpose issued by Ministry of Commerce)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Copy of authorizer's ID &nominees)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납세 ID 증명서(Tax ID Certificate)
- 수입자의 사업장 위치가 명시된 지도(Importer's Map)

○ 수출업체(제조업체) 준비서류

- 테스트용 제품 샘플(Sample of product to be tested)

필요 서류 제출 및 인증비용 완납 후, 3일 이내로 통신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 발급 후에는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

○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화: 66-2-271 - 0151, Call Center: 1200 (Press 2)
- 팩스: 66-2-271-3516
- 홈페이지: www.nbtc.go.th

2) 태국 식약청(FDA)의 승인

태국 식약청의 승인에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이 있으며 각 품목별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는 의료기기법(The Medical Device Act 200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보건부 산하의 식약청(FDA)에서 관할하고 있다. 제품 인증과 관련해 태국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일반 의료기기(General Medical Device), 신고 의료기기(Notified Medical Device), 면허 의료기기(Licensed Medical Device)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기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경과 시 연장이 요구된다.

태국 정부는 등록 유효기간 단축,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기준 도입으로 인한 신고 및 허가 의료기기 품목 수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개정 후 의료기기 관련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 카테고리 1: 일반 의료기기(General Medical Devices)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를 제출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약 90%가 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포함돼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의료기기 중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와 더불어 제조품질증명서(ISO, GMP) 제출이 필요하다.

- 임플란트
- 조직(tissue origin)관련 의료기기
-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선 기구
- 체외 진단기구(In Vitro Diagnostic Products)
- 생화학적 진단: Glucose, Lipid profile, Liver function test, Uric acid, BUN, Creatinine, Pregnancy test, Narcotics, Hormones(Thyroid, Fertile), Tumor markers(AFP, CEA, PSA), Cardiac markers (CK,CK-MB,Troponin)
- 의료기기 소독 용품
- 치아 충전(tooth filling), 보철 관련기기

자유판매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시 '일반의료기기 수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신청 수수료는 품목당 100밋이다. 승인 비용은 품목 수 10개 이하의 경우 1,000밋, 10개 초과시에는 2,000밋이 부과된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된다.

○ 카테고리 2: 신고 의료기기(Notified Medical Device)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이외에도 신고서(Jor Nor 1)와 함께 제품 설명서, 사용법, 사양, 라벨, 생산자 및 유통업자명과 같은 상세정보를 태국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품 신고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으로 약 90일이 소요된다.

신고 의료기기는 아래와 같다.

- 재활치료 의료기기
- 혈중 알코올 진단 도구

- 의료용 실리콘
- 기타 진단 도구
- 실리콘 가슴 보형물
- 안과용 점탄성 물질(Ophthalmic Viscosurgical Devices; OVD)
- 각성제 테스트기(Metamphetamine screening test in urine)

○ 카테고리 3: 면허 의료기기(Licensed Medical Device)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태국 식약청은 면허권자가 제품의 생산과정, 수입, 판매,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태국 식약청에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와 허가 신청서(Khor Por 1)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수수료는 2만 바트이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90일이다.

면허 의료기기에는 8종류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

- HIV 진단 도구
- 콘돔
- 실험용 장갑
- 수술용 장갑
- 의료용 혈액 주머니
- 콘택트 렌즈
- 1회용 피하 주사기(Sterile Hypodermic Disposable Syringes)
- 1회용 인슐린 주사기(Sterile Insulin Disposable Syringes)

카테고리 2, 3 중에서 FDA 신고 및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예외 항목은 8가지이며 아래와 같다.

- 정부기관 및 태국 적십자가 부검 및 질병의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 병원 내 소독용 의료기기 제조 시
- 의료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할 경우
- 태국 FDA에 의해 의료기기 취급 면허 또는 신고 자격을 득한 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특정 환자 또는 동물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회, 교육, 연구, 조사, 시험 조사를 위한 용도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의료기기 생산을 위해서 의료기기 부품을 수입할 경우
- 개인적으로 특정 환자 또는 동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샘플 제품을 제조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 태국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과(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of Thai FDA)

- 전화: 02-590-7244
- 팩스: 02-591-8445
- 이메일: Mdcd1988@fda.moph.go.th
- 홈페이지: www.fda.moph.go.th

2-2) 화장품

화장품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2015)에서 규정하고 있다.

FDA 화장품 인허가 담당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사용방법, 목적, 성분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치약, 비누, 생리대(단, 유아용 기저귀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성인용 기저귀는 의료기기로 분류), 머리 염색약 또한 화장품 범주에 포함되며 물티슈의 경우에도 일반 물티슈가 아닌 향료 및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의 경우 FDA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토피, 화상 치료제, 곰팡이 치료제, 모기 기피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약과 화장품의 범주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태국에서 화장품 취급절차가 간소해져서 위임장 작성, 사전제품등록의 2가지 절차를 거쳐 유통이 가능하며 2017.9.4부터 취급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품 등록시 품목당 수수료 1,000밧(33달러)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 대리인 지정을 통한 위임장 신고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만이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추후 제품 신고(등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임장 양식(F-C2-11)작성 후 일체 서류(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및 위임자의 태국 거주지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사본 1부)를 구비한 뒤 FDA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한 뒤 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소요기간은 1일, 위임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FDA 방문을 통하여 위임장 양식을 신고해야 한다.

◦ 화장품 신고(제품 등록, Product Notification)

화장품 수입 전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FDA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E-Submission)이 가능하나 방문접수 시에는 전산 입력 수수료(최소 500밧)을 부과하도록 하여 수입업자의 온라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제품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품당 1,000밧*(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 100밧 + 제품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900밧)이 부과되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된다. (제조공식 기준으로 동일한 명칭의 립스틱 또는 아이섀도우 등이 호수 등으로 구분되는 여러 색상 존재 시 수입하고자 하는 색상 묶음이 1개의 제품으로 취급된다.)

등록필요서류는 신고서류(F-C2-1, F-C2-2 등 2개),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신고 완료된 위임장 사본 1부, 제조업체 발급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원본 1부, 사본 1부이다. PIF는 인보이스(Invoice), 화장품 식약청 등록 번호(Cosmetic Notification acknowledgement),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제조방식 관련 서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1개 이상의 수입업체를 통해 화장품을 태국에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각각 다른 태국 수입업체가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다.

태국 식약청은 제품 등록 신청서류 작성 시 화장품 전 성분(all Ingredients)과 제조방식(Formula)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 주요 성분명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거해 기재해야 한다. 성분에 관해서는 사용 제한 성분과 사용 금지 성분으로 나뉘는데, 해당 내용은 식약청(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자료는 태국어 자료이나, 영문 성분명, CAS No. 그리고 간략한 영문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참고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태국 식약청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범위는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화장품 수입통관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상품과 제품등록서류(PIF: Product Information File)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통관 시에 세관에서 식약청 등록 번호와 함께 상품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품 라벨의 경우 태국어 또는 영어 둘 중 하나로 부착되어야 세관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 통관 시 식약청에 신고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수입 통관 후 유통 전 태국어 라벨링 작업

수입 통관 후에 태국어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수입 후 30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태국어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11가지이며 개별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유통명/화장품명(Trade name/Cosmetic name)
- 화장품 종류(Type of product)
- 성분내역(List of all ingredients)
- 수입업체명과 주소, 제품 원산지(Name and address of importer + country of origin)
- 제조일자(Manufacturing date)
- 유효기간 만료일(Expired date)
- 사용법(Instruction of use)
- 배치번호(Batch number)
- 순중량(Net content)
- 경고문(Warning)
- 제품등록번호(Notification Number)

2-3) 식품

식품은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관리과(Food Control Division)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 식품법(Food Act, 1979)에 따르면, 식품은 특별관리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일반식품(General Foods) 등 4종류로 구분되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제품등록번호(Iek Or. Yor.)를 부여해 관리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별관리식품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이나, 제품 상세 내역 제출이 지연될 경우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의 공통 준비서류는 식품 수입 허가서 사본, 제조시설 증명서(GMP, QMS, HACCP, ISO 9001, 9002, 22000 중 한가지이상), 제조과정 증명서 이다.

- 특별관리식품 (Specially Controlled Foods)

광범위한 소비에 따른 위험성이 수반되는 식품, 유아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소비자 계층이 존재하거나 제조공정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식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식품 등록 Food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우유, 식품첨가제, 영유아식품(분유 등), 체중조절 식품, 유아용 보충식품, 조제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품등록 신청서(Orr.17)양식을 공통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통제식품의 인증에는 35~90영업일이 소요된다.

-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특별관리식품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식품군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식품정보제공(Food Declaration) 및 라벨링 부착이 필요하다. 커피, 차, 크림,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젓장, 꿀, 치즈, 잼, 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준식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공통서류와 함께 제품등록 신청서(SB.7), (SB.3, 로열젤리 등 보충식품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2영업일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이며, 표준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정보제공 및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빵, 캔디, 젤라틴 함유 식품 및 젤리류, 검, 사탕, 즉석조리식품, 마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공통서류와 제품등록 신청서(SB.7)이다.

○ 일반식품(General Foods)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으로 신선 식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다.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입업체의 수입허가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 라벨링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 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고 'premium grade' 또는 'grade A' 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식품명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 제조국(원산지)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식품 구성성분
-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3)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증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카테고리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이 정한 강제 표준(강제 인증, 필수 인증, Compulsory Standard)을 득해야 한다.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TISI 홈페이지(tisi.go.th) 상 강제 표준 리스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인증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태국 산업표준원(TISI)의 인증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 공장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태국 산업표준원(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승인 수수료는 건당 1만 바트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에 통상 45~90일 내외로 소요되나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세금납입증명서
- 여권 및 노동허가증
- 선적서류
- 카탈로그
- 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
- 품질 관리확인서
- 매뉴얼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1926년에 처음 제정된 관세법은 2017년 개정(CUSTOMS ACT B.E.2560)되어 1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Royal Decrees),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Notification) 등이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개 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F 가격을 참조해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격,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출 관세는 대부분 면제되며,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이다.

재무부는 내각의 비준을 통해 관세를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면제는 유류·가스 사업면허권자 및 하도급업체 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해 장려된 특정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 수입시의 두가지 사유에 적용된다.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클럽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반출이 3 시간 또는 그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사전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통합관세 검색(Integrated Tariff Searc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관세 검색 사이트 링크:

http://igtft.customs.go.th/igtft/en/main_frame.jsp?lang=en&left_menu=menu_integrated_tariff_search

2) 2017년 11월 13일 개정 관세법 주요 내용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된 후 18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 평가)은 수입 및 수출 통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3년 이내 관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 평가 직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기존 법안의 경우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품 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달

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관세 부족액 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기존 법안의 경우 불법 통관 시 추정 책임자를 주주와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법인, 업무상 책임을 지고 책임자,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수입자는 세관양식 171에 의해 세관 표준국, 지역 세관국 또는 세관에 관세 평가에 대해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보내어 검토를 한 뒤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한을 최대 180일로 제한하였으며, 180일이 초과될 시에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태국정부는 밀수 방지와 세관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불법 통관 적발 시 물품 금액의 25%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및 제보자에게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20%로 변경 및 각각의 최대 보상금액을 500만 바트까지 제한한다.

-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관세 환급 기한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환급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고서가 관세 환급 대상이어야 한다.

-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사후 심사 기간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화물의 환송 및 환적: 태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한해서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할 수 있다.

3) ASEAN 국가간 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 발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HTN 2017 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4) 관세 환급

관세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수입물품 본국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재수출 시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송(재수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상운송을 통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 시와 동일한 항구를 사용해야 하며, 수량 감소는 관계가 없으나 물품 자체의 변동이나 추가는 불가하다.

환급신청서 작성양식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환급서류 제출 후 환급 적정 여부에 관한 태국 세관의 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4) 관세율 적용 방법

4-1) 관세율 구조

◦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협정 등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현재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각 품목별 양허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이 원칙이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 태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4-2) 관세율 적용 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와 태국 간의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에서 제외)으로 분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제품이 상호 대응 세율 적용 중인지 태국 세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AK FORM의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 증명 시 한-태 교역품목의 관세 양허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다.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 형태로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도 가능(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4-4) AK FORM 발급

◦ AK FORM 발급 절차: 관세청 관세청 UNIPASS 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작성 및 전송 → 세관승인 →

C/O 발급

◦ AK FORM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4-5) FTA 특혜 관세율의 사후 적용

태국에서 제품 수입 신고 시 AK FORM 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후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를 통지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작성시 ""P14""와 ""AK1 or AK2 or AK3""에서 조건에 맞는 코드를 체크하여 제출한 경우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이후 관세청에 관세 환급 증명서를 제출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협정 관세 사후기간 신청기간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5) 수출 특혜(Export privileges)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수출 장려 수단 중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 보세창고 제도(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산업단지 내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 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 CODE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본국으로 회송(SHIP B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전 태국 관세청에 사전 관세 확인 제도(Advanced ruling tariff)를 통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다.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사이트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를 입력하면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에 원하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itd.customs.go.th/igt/en/main_frame.jsp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배송비 제외 상품 가치(INVOCIE VALUE)가 대략 100USD 이하인 경우는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지만 제품에 따라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7%)가 부과될 수 있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치(INVOICE VALUER)가 100USD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 및 수입허가 품목에 관해서는 수입허가서를 받은 뒤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 이전에 관세와 부가세(VAT 7%)를 완납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EDI 의무 전송을 시행함에 따라 전자 수입시스템(e-Import)을 통하여 수입 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데이터를 미 전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과금이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

통관은 화물 도착 전 혹은 도착 시 포워딩 업체가 선박 도착 보고서, 화물 적하목록, 컨테이너 리스트 정보 전달하면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승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재승인 요청이 발송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 도착 통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여되며, 응답 메시지가 포워딩 업체로 전송된다. 이후 화물 도착 시, 수입업체 혹은 통관업체가 수입 통관절차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전송 받은 데이터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뒤 1분 이내에 통관 및 지불 번호를 부여한다. 수입업체는 자동 이체 지불 혹은 온라인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제반 비용을 지불한 뒤 수입업체 측에서 출고 상품 관련 화물 보관 업체와 연락을 수행한다. 이후 데이터의 분류에 따라 레드라인(Red Line)인 경우 물리적인 대조가 필요한 품목으로 항만 관리 위원회의 화물 컨테이너 실사 이후 물품이 통관되며 그린라인(Green Line)의 경우 자동으로 출하 허가가 되어 1분 이내로 통관이 마무리된다.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DECLARATION OF IMPORT ENTRY)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박의 이름, 도착일자, 도착 예정 항구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 상태 및 원산지 등
-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등
- 통관운송장(CUSTOMS DELIVERY ORDER NO.35)
- 선하증권(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INVOICE AND PACKING LIST)
- 외환통제양식 21(EXCHANGE CONTROL FORM 21)
- 특정수입 허가 또는 증명서(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 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과 까르네 통관(Carnet Import Entry)

전시회, 박람회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임시 통관 또는 까르네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 임시통관 및 까르네 통관의 경우 6개월 이내

반출이 원칙이며, 반출할 의사가 없다면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재반출할 목적으로 임시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 임시 통관의 경우 물품 인출 전 현금 보증을 하게 되는데 다시 물품 반출 시 내부 심사를 거쳐 별도의 특이점이 없을 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화물 인도 지시서(Release orde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물품별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신청절차: 서류 구비 후 서류 일체 태국 세관 제출
- 소요기간: 1영업일
- 비용: 무료
- 제출처: 태국 관세청(방콕 이외의 지역은 지역 관세청에 신청)
 - 주소: 1 Sunthon Kosa Rd, Khwaeng Khlong Toei, Khet Khlong Toei, Krung Thep Maha Nakhon 10110
 - 영업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 구비서류
 - 수입 신고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 인보이스
 - 화물 인도지시서
 - 패킹 리스트
 - 보험료 청구서
 - 세금/면세 및 채권 신청(수입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수입품에 대한 설명, 수입 목적, 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장소 및 시간, 참석자 수(국제 회의의 경우)등의 정보 포함)
 - 회의 주최자 및 국제 회의 개최지 소유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신

까르네(ATA Carnet) 통관 서류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 반출세관이 명시된 까르네 서류와 인증서류(해당시), 선하증권 제시가 필요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형식적 요건 위주의 원산지 증명서 심사

FTA 협정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 시 관세 절감 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 상의 내용(점, 글자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사본(COPY)을 인정하지 않는 등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통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추가 창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준비해야 태국 내 수입 시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2) HS 코드 불일치

물품이 태국에 도착한 후 통관 진행 및 검사 시 HS CODE 불일치로 인한 계류 또는 관세 추가 납부 등 불필요한 절차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태국 관세청에서는 사전관세확인제도(Advanced ruling tariff)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후 한달내로 관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3) 임시통관 시 유의사항

임시통관 관련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물품 반입 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전시회 종료 후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을 통관했던 항구 또는 공항 세관에 신고 후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판매가 가능하며, 물품 반입의 초기 목적이 전시회 참가였으므로 이 경우 협정 세율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까르네 통관과 관련하여 전시회(Fairs/Exhibitions)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 후 본국으로 재반출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

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 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4)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류(Application form), 제품 설명자료(제품 구성, 기술설명서, 제품 기능, 제품이미지 또는 패키징, 샘플(필요 시) 등), 발주서, 인보이스, 신용장, 수출입 계약서 등 수입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신청 건수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이 통관 중이거나 법정 소송 계류 중일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위해 수입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제출할 경우 소요기간이 근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수입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사전확인제도 통보내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 신청제품 및 신청자만 사전확인제도 결정 내용의 활용이 가능하다.

5)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잘못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 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기 수입신고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수입요건 구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결론적으로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아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 상의 변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o BEGISTICS PUBLIC COMPANY LIMITED

주소	3656/64 Green Tower Building, 19th Fl., Unit K.Rama 4 Rd., Klongton, Klongtoey,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2-367-3570
이메일	contact@begistics.co.th

홈페이지	http://www.btc.co.th/
비고	태국기업, 한국인 담당자가 상주

◦ LOGEM INTERNATIONAL

주소	75/61 Richmond Bldg., 17 th Fl., Soi Sukhumvit 26, Sukhumvit Rd. Klongton, Klongtoey 10110
전화번호	66-2-259-5640~5
이메일	moving@logem.co.th
홈페이지	http://www.logemlogistics.com/
비고	태국 진출 우리기업

◦ CIC Centran International Corporation(Thailand) Ltd.

주소	3388/90, 91 SIRINRAT BUILDING, 25th FLOOR , RAMA 4 RD., KLONGTON,
전화번호	66-2-367-5935~42
이메일	export@cic.co.th
홈페이지	http://www.cic.co.th/
비고	한국인 관리자 상주

◦ Sintop International (Thailand) Co., Ltd.

주소	850/21 Ladkrabang 30/5 Road, Ladkrabang, Ladkrabang, bangkok 10520
전화번호	66 2130 0415~17
이메일	bkk@sintop.co.th
홈페이지	https://www.sintop.com.sg/
비고	태국 진출 우리기업

◦ Kerry Logistics (Thailand) Limited

주소	906, 9/F, Chao Phya Tower, 89 Soi Wat Suan Plu, New Road,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전화번호	66-2-686-8999
이메일	TH.ExpressCallCenter@kerry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th.kerryexpress.com/

<자료원 :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관련법규

태국 내 투자와 관련된 법은 투자진흥법(1977년에 제정되어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개정) 및 2017년 2월 발효된 신설법안인 경쟁향상법(Ac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argeted Industries B.E 2560(2017))이 있으나 양 법안 모두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외국기업 투자우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년 제정)을 두어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 사업 제한 업종 등에 대해 규정 사업에 관해 관장하고 있다.

2) 태국 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신청절차

사업자는 투자청의 소정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투자청 내 관할 부서 또는 E-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로 담당 공무원과 연락해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발표)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제출된 투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처 및 심사 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다. 2억 바트 이하(625만 달러)의 투자는 서류 제출 후 40일 이내에 투자청사무국에서 심사하며, 2억~20억 바트(625만~6,250만 달러) 규모 투자는 투자청 소위원회(Sub-committee)에서 승인하며 소요기간은 서류 제출 후 60일 이내이다. 20억 바트 이상(6,250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는 투자청 소위원회 및 BOI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소요기간은 서류 제출 후 90일 이내이다.

사업이 승인되면 태국 투자청은 7일 내로 구체적인 조건 및 혜택 내용이 기술된 서면을 사업자에게 발송해 통보한다. 당국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투자청에 촉진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며, E-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만일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동 기간 내에 미리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투자 촉진 인증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태국 내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 혜택 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30개월 이내에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36개월 이내에 공장 착공 및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 과정이 두 달 이상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증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검사관의 조사 결과 사업자가 당국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국은 사업자에게 공식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청 이사회, 재정부 및 유관부처 등에 투자혜택 증서의 철회를 상정할 수 있다(2018년 12월 태국 투자청 홈페이지 확인 자료).

투자인센티브

1) 기본 장려책(인센티브)

투자촉진 대상 활동을 목록화하여 세부 인센티브 종류를 A그룹 4단계(A1~A4), B그룹 2단계(B1, B2) 총 6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다. 투자촉진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농업 및 농업기반 제품
- 광물, 세라믹 및 기본 금속업
- 경공업
- 금속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업
- 전기·전자 산업

- 화학, 제지 및 플라스틱업
- 서비스 및 공공시설
- 기술 및 혁신 개발

A그룹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A1: 8년, A2: 최대 8년, A3: 5년, A4: 3년),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연구개발 및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외국인 토지소유 허가 및 해외 송금 허가 등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B그룹은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으나 B1에 해당되면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고 B2에 해당되면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비과세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태국 투자청 홈페이지(<https://www.boi.go.th/index.php?page=incentive>)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근 한국어가 지원돼 내용 확인이 더욱 편리해졌다.

- A1: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과 디자인에 집중하는 지식기반 활동
- A2: 국가 개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활동,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가가치의 창출 및 태국에 없거나 기존 투자가 적은 분야에 대한 활동
- A3: 태국에 이미 적게 투자된 활동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첨단 기술 활동
- A4: 사업 기술영역 A1-A3그룹보다 낮은 기술이지만 국내 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활동
- B1, B2: 첨단 기술은 사용하지 않지만 가치사슬에 여전히 중요한 지원 산업

2) 추가 장려책

경쟁력 강화 혹은 중앙 집중 배제 및 지방 분권화 혹은 산업 지역 발달을 위한 특장점을 보유한 경우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장점(Merit) 보유로 간주되는 활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BOI 위원회가 승인한 태국 과학기술 분야 내의 기술, 인적자원 개발기금 교육기관, 전문 교육센터, 연구개발(R&D)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기부, 태국에서 개발된 기술상용화에 대한 IP 취득, 첨단기술 교육, 첨단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에서 51% 이상의 태국 지분을 보유한 현지 공급업체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활동

◦ 중앙 집중 배제 또는 지방 분권화의 특장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체(프로젝트)가 태국 내 자본 소득이 낮은 20개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 산업 지역 발달을 위한 특장점을 보유한 경우: 사업이 산업지역 또는 촉진산업단지 구역, 특별경제개발단지, 태국 남부 국경지대(나라티왓, 빠따니, 알라, 사툰, 송클라)에 위치하는 경우

제한 및 금지(업종)

제조업 투자의 경우 일부 특정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하면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List 1: 외국인 50% 미만 소유
- List 2: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각료 회의 동의하에 60%또는 75%까지 가능
- List 3: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 시 100% 소유 가능

Category A의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다. Category B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으나, 내각(Cabinet)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 장관(Minister)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ategory C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으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사업영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에 크게 2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외국인사업법 제 10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Category B, C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외국기업이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우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태국에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 Category A: 투자 금지업종이지만 특별법 또는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문방송사업, 쌀 경작, 조경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식물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문화재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가 이에 해당된다.

- Category B: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정부(내각)의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인의 경우 태국-미국 간 상호 협정에 의거,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 시 내각 승인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생산, 판매, 관리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관련 부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②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③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 Category C: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투자청, 투자위원회 또는 상무부로부터 외국인 사업 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로 외국인 기업에 비해 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이다.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 조항 별도),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조항 별도),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전통 농산물 관련 국내무역, 소매업(총 최소자본금 1억 бат 이하 또는 점포당 최소자본금 2,000만 бат 이상), 도매업(점포당 최소자본금 1억 бат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 관광업,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이에 해당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주변 국가와의 경제적 연결성을 제고하고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BOI위원회(Board)는 특별경제구역 투자촉진 특히 접경 지역이거나 근방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청 공고 No.4/2557를 발표하고 10개의 국경·국경인접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EZ)’으로 지정했다. 또한, 구역 내 13개의 산업군을 선정하여 지역적 연계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태국 정부는 1, 2차로 나누어 각각 5개씩 총 10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 1차 선정지역(5개): 딱, 사게우, 뜨랏, 묵다한, 송클라
- 2차 선정지역(5개): 농카이, 치앙라이, 칸차나부리, 나콘 파놈, 나라티왓

선정된 13개 산업군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나 국경지대 또는 주변국으로부터 원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 농업 및 식품가공
- 세라믹 제품
- 직물 및 섬유 산업
- 가구제조산업
- 보석 및 귀금속 산업
- 의료기기
- 자동차, 기계 및 부품
- 전기전자
- 플라스틱
- 의료산업
- 물류업
- 산업단지
- 관광산업

특별경제구역에서 사업활동 수행 시 최대 8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A1또는 A2에 해당 시 5년간 추가 50%의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 Amata City Industrial Estate

규모	13,814,400㎡
위치	7 Mu Thi 3 Thanon Sai 331 Tambon Bo Win Amphoe Si Racha Changwat Chon Buri 20230
임차료	3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 당 250밧(7.6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업체명: Amata City Industrial Estate ◦ 전화: +66-38-346-442~3 ◦ 이메일: tassanee@amata.com@amata.com ◦ 홈페이지: www.amata.com
비고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850만 밧(25만 8831달러)

◦ WHA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Map Ta Phut)

규모	5,673,600㎡
위치	18 Tumbol Huai Pong Amphoe Meang Province Rayong 21150

임차료	3년~5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당 190~210บาท(5.8~6.4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업체명: WHA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 전화: +66-38-685-776 - 이메일: marketing@wha-group.com - 홈페이지: www.wha-industrialestate.com
비고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900만 บาท(27만 4056달러)

◦ Pinthong Industrial Estate

규모	1,012,800㎡
위치	789 Moo 1, Nongkho ‐ Leamchabang Rd, T. Nongkham, A. Sriracha, Chonburi 20230
임차료	3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 당 140~220บาท(4.3~6.7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업체명: Pinthong Industrial Estate - 전화: +66-38-296-334~7 - 이메일: somjit@pipestate.com - 홈페이지: www.pipestate.com
비고	-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400만 บาท(12만 1083달러) - 공장 매입비용: 1제곱미터(㎡) 당10,500บาท(319.7달러)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주요 지역별 여건

◦ 방콕(Bangkok)

- 면적: 1,569km²
- 인구: 568만 명(2017년)
- 주요 기관: 대법원과 정부종합청사(모두 썽 와타나 지역 소재) 등 다수
- 산업: 관광업, 유통업, 서비스업, ICT 산업 등
- 비고:
 - 태국 전지역 중 최강의 경제 수준을 보유
 - 15개의 국립대학교 및 17개의 사립대학교 소재

◦ 촌부리(Chonburi)

- 면적: 4,363km²
- 인구: 151만 명(2017년)
- 중심 도시: 므앙 촌부리(Mueang Chonburi)
- 주요 기관: 시청, 산업단지(Hemaraj, WHA, Amata, Pinthong), 심해항구(Laem Chabang), 우타파오 공항(U-tapao Airpor) 등
- 산업: 관광업(파타야 주변 해양관광 등) 및 제조업(전기전자: 삼성전자 태국 법인, 자동차: 도요타, 제약: 메드 존슨(Mead Johnson), 식품가공: 본카페(Boncafe), 화학: 니폰 페인트(Nippon Paint), 에너지: 보윈 클린 에너지(Bowin Clean Energy), 바이오화학: 테크노플라스트(Technoplast))
- 비고:
 - 4,00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 160km에 달하는 해변을 끼고 해양관광 및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 요식업 발달(태국의 대표 관광지인 파타야도 촌부리주에 위치)
 -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3개주(촌부리, 라용, 차츄사오)의 하나임.

◦ 라용(Rayong)

- 면적: 16.95km²
- 인구: 71만 명(2017년)
- 중심 도시: 므앙 라용(Mueang Rayong)
- 주요 기관: 시청, 산업단지(IRPC Industrial Park) 등
- 산업: 관광업 및 제조업(전기전자: 다이킨(Daikin), 화학: PTT Global Chemical, 자동차: GM, 제약: i+MED Laboratories, 식품가

공: 켈로그(Kellogg), 에너지: Gulf JP NLL Co., Ltd. 바이오화학: PTT MCC Biochem)

- 비고: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3개주(춘부리, 라용, 차츄사오)의 하나임.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5,493.03	4,809.07	5,623.78	2,068.33	7,635.2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1,678.56	5,575.37	1,687.25	12,414.16	19,283.14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208	52	131,136	259	182,158
2015	164	45	177,526	196	109,080
2016	190	76	110,515	249	112,017
2017	225	62	109,816	269	105,379
2018	132	36	72,527	164	64,54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09	20	57,334	137	108,38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760	7	1,569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3	0	12,098	3	12,098
건설업	16	6	25,620	16	25,619
도매 및 소매업	38	11	7,079	42	6,481
운수 및 창고업	4	1	517	3	454
숙박 및 음식점업	3	1	523	6	619
정보통신업	19	5	5,367	20	5,246
금융 및 보험업	3	1	18,675	3	18,675
부동산업	4	2	501	11	3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2	1,824	7	1,81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2	228	2	228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	0	610	2	61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1	95	3	92
광업	1	0	48,081	1	1,577
제조업	72	14	69,643	91	66,66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307	2	307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3	0	9,335	3	9,335
건설업	9	1	10,898	5	10,122
도매 및 소매업	32	11	22,292	33	11,793
운수 및 창고업	12	5	5,475	11	3,975
숙박 및 음식점업	6	4	6,947	11	2,600
정보통신업	8	1	1,601	8	1,601
금융 및 보험업	2	2	1,697	2	58
부동산업	0	0	0	9	1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	265	3	16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4	2	254	9	11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1	492	4	492
교육 서비스업	1	1	84	1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6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1	1,230	3	884
제조업	72	18	56,248	97	61,623
건설업	18	5	10,687	17	9,728
도매 및 소매업	42	24	17,051	52	13,047
운수 및 창고업	12	5	4,120	17	5,217
숙박 및 음식점업	11	6	3,798	18	4,934
정보통신업	14	6	1,083	16	799
금융 및 보험업	0	0	0	1	1,075
부동산업	1	1	3,408	8	3,4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3	95	3	9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	3	11,407	10	11,111
교육 서비스업	2	2	72	3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2	1,316	4	61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00	21	37,220	120	35,96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2	301	5	171
건설업	6	1	4,717	10	4,520
도매 및 소매업	49	17	20,453	59	18,620
운수 및 창고업	5	1	894	3	389

숙박 및 음식점업	7	3	4,419	15	5,042
정보통신업	17	7	3,725	19	3,808
금융 및 보험업	6	1	31,970	7	32,054
부동산업	2	1	410	1	1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3	287	8	28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	2	131	4	104
교육 서비스업	3	0	38	8	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1	2,947	8	2,9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	84	1	74
N/A	2	1	2,220	1	1,17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5,411	2	2,361
제조업	54	11	28,981	74	24,722
건설업	11	3	12,916	12	12,981
도매 및 소매업	30	10	14,720	42	14,902
운수 및 창고업	11	2	4,904	10	4,448
숙박 및 음식점업	1	0	472	1	138
정보통신업	13	3	877	12	7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5	3,184	9	3,17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972	1	9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90	1	90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전자 태국법인

진출년도	198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태국법인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모기업명	LG전자

○ 포스코 타일랜드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포스코

○ 한화케미칼 타일랜드

진출년도	198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제품
모기업명	한화케미칼

○ 삼성전기 타일랜드

진출년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부품
모기업명	삼성전기

○ 동부타이스틸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동부제철

○ 현대 엔지니어링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건설)
업종	건설
취급분야	전기통신 프로젝트 등 건설 수행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동국제강 타일랜드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동국제강

○ 삼성 엔지니어링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건설)

업종	건설
취급분야	프로젝트 수주 등 건설업무 수행
모기업명	삼성엔지니어링

○ 한온시스템즈 타일랜드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전기전자(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제작)
모기업명	한온시스템

○ 이래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이래오토모티브

○ GMM CJ O 쇼핑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홈쇼핑
모기업명	CJ ENM

○ 하이쇼핑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홈쇼핑
모기업명	현대홈쇼핑

○ 제일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광고)
취급분야	광고
모기업명	제일기획

○ CJ 로지스틱스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수출입화물의 항공·해상운송
모기업명	CJ대한통운

○ 대한항공 방콕지점

진출년도	196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업
모기업명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방콕지점

진출년도	199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업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

○ 락앤락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플라스틱 용기 등 주방용품
모기업명	락앤락

○ 코웨이 타일랜드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정수기, 공기청정기
모기업명	코웨이

○ 아모레 퍼시픽 타일랜드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

○ 탐앤탐스 타일랜드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커피, 음료, 디저트
모기업명	탐앤탐스

○ 삼성 물산 태국 법인(Samsung C&T(Thailand))

진출년도	199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산업재
모기업명	삼성물산

<자료원 : Corpus BOL>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며, 필요서류만 갖추어지면 2~3일 이내로 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진출형태이다.

지사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은 태국에서 지사의 형태로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으로, 지사의 위법행위 발생시 외국법인(본사)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최소 1인 이상의 본사 직원을 태국 지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사에서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세금과 관련하여 지사는 태국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하여 태국법인세율인 20%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 따라서 태국 지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ID카드 신청과 VAT 등록이 필요하며 조세국(Revenue Department)에 매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 제 8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제한업종(List 1, List 2, List 3)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지 않고는 지사운영을 할 수 없었으나, 2017년 6월 9일 상무부 장관령이 발효되면서 무역업(International Trading Business)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사업허가를 면제하고 동 분야에서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형태로 외국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소자본금은 3년간 예상사업운영비용의 연평균 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최소 300만 바트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초기 3개월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1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2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3년 이내 나머지 25% 반입이 필요).

지사 운영을 위해 본사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입금이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태국 지사 운영자 중 최소 1인 이상은 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호텔은 주소지로 사용 불가).

지사 등록 승인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약도, 태국 내 사업계획 상세설명서, 지사장 여권 사본, 지사 조직도, 해외 본사의 사업설명 브로슈어, 해외 본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타 요구서류를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비용은 2,000바트, 처리에는 약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지사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비용으로 최소 20,000바트~최대 250,000바트(최소자본금 1,000바트당 5바트 계산)을 지불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는 지사 및 법인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본사를 위해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
- 본사가 구매할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 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본사의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 태국 사업동향에 대해 본사에 보고

태국에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은 과거 지사 설립시와 동일한 3백만 바트였으나, 2백만 바트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사업개시 후 최초 3개월 이내 25%, 1년 이내 25%, 2년 이내 25%, 3년 이내에 나머지 25%의 운영자금 반입, 즉 3년 내 200만 바트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표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본사를 대신하여 구매 주문
- 본사로 구매된 제품 선적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 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 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 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 태국 고객과 본사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 관련 정보 제공

과거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의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BC)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 규제가 완화되었다. 따라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 후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법인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2~3일이면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태국 주식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로 구분된다.

공개 주식회사는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공개주식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주식 또는 회사채의 공모가 가능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공개주식회사는 최소 15명의 주주 및 발기인이 필요하고,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은 20세이다. 이사회는 최소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절반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또한 최소 주식의 50%는 일반인에게 매도 가능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하며, 최소 사외이사 숫자는 3인 이상이다. 이와 달리 비공개주식회사는 1인 이사회도 가능하고 이사 전원이 외국인이어도 무방하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주의 책임은 주식자본에 한정된다. 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태국에 회사를 설립시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되며,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은 12세이고 각각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는 1인 이사회도 가능하며, 이사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민상법상 비공개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고용허가증(Work Permit) 발급을 위해 외국인 1명당 자본금 2백만 바트 이상, 태국인 4명 고용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는 한 명의 자연인이 소유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차지하고 손실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가장 단순한 사업형태이다. 개인회사는 사업등기법(Business Registration Act)에 의해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한경회계법인

전화번호	+66-(0)2-116-8450
주소	988 Soi Sukhumvit 55, Khwaeng Khlong Tan Nuea, Khet Watthana, Krung Thep Maha Nakhon 10110 Thailand
이메일	swkim@hankyung.co.t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김성원 회계사

◦ 우리회계법인

전화번호	+66-(0)2-258-1643
주소	75/29 Richmond Building 12th Floor, Soi Sukhumvit 26, Sukhumvit Road, Khlong Tan, Khlong Toey, Bangkok 10110 Thailand
홈페이지	http://wooriaccounting.com/
이메일	dhkoh99@wooriac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고동호 회계사

◦ 법무법인 중정

전화번호	+66-(0)63-440-7765
주소	75/29 Richmond Building 12th Floor, Soi Sukhumvit 26, Sukhumvit Road, Khlong Tan, Khlong Toey, Bangkok 10110 Thailand
홈페이지	http://wooriaccounting.com/
이메일	cwkim@legalkairo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김절웅 변호사

o Mazar Thailand

전화번호	+66-(0)2-670-1100
주소	Empire Tower, Tower 2, 12th Floor, S Sathorn Rd, Yannawa, Sathon, Bangkok 10120
홈페이지	https://www.mazars.co.th
이메일	susan.park@mazars.co.t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한국 DESK 박정민 회계사 내선번호: 344

o Tilleke&Gibbins

전화번호	+66-(0)-2-653-5555
주소	Suphalai Grand Tower, 1011 Rama III, Chong Nonsi, Yan Nawa, Bangkok 10120
홈페이지	https://www.tilleke.com/
이메일	bangkok@tillek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태국 태포 법무법인이나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변호사 없음

<자료원 :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관련 법령

기업 철수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른 자발적인 철수(청산)와 파산법(Bankruptcy Act)에 따른 철수로 나뉜다. 태국은 강제 철수는 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권유하는 등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기업 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철수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자발적 철수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제 1247~1271조에서 기업의 철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발적 철수 관련 비용은 관공서 수수료, 광고비용, 대주주 철수통보, 변호사 선임비용, 감사 비용, 고용인 퇴직금, 파산관련 법정 비용(해당 시) 등이 있다.

기업 철수 소요 시간은 기업의 제반 업무 정리, 부채 청산, 자산 분배 문제의 과중성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기업 철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철수는 정부의 승인 및 중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철수 이후 14일 이내에 기업 철수와 청산인(liquidator)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청산인은 제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고 기업은 철수가 마무리되고 회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 피고용자, 기타 관계자의 책임 또는 의무는 철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청산인은 신문 광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수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들에게도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철수 사실을 알리고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계별 철수절차는 아래와 같다.

- 모든 투자자는 투자자 이름, 장소, 시간, 철수 조건, 철수 날짜, 효력개시 날짜가 적힌 철수 각서 또는 철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철수와 철수 보상 책임자를 지정하고(기업 선서서에 책임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매니저가 법에 규정된 철수 관련 책임자로 선정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투자자의 친필 서명 2부를 준비한다. 지정된 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행위(민사 및 형사), 청산에 필요한 업무의 집행, 회사의 자산매각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 지역 신문과 채권자에게 철수 사실을 통보하고 철수절차를 마친 후 14 일 이내에 철수를 등록한다. 지역신문에는 최소 1회 이상 회사가 해산하였음을 공시해야 한다.
- 청산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작성해 감사(Auditor)에게 제출한다.
- 감사의 철수 대차대조표 승인이 있어야 재무제표가 증명이 되므로 대차대조표 승인을 위한 회의를 열고 기업의 매니저나 다른 사람을 파산신청자(Accountant)로 승인한다.
- 파산 신청자는 자산, 채권자 지불금액, 매니저 지불금액을 통합하고 만약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파트너에게 자금과 평균 이익을 반환한다. 파산 신청자는 법원에 파산 통보를 요청한다.
- 철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회계는 철수절차 보고서(Lor Chor 3)를 준비해야 하며 3개월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청산일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조세완납 증명서(tax clearance)를 사업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철수절차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파산 신청자는 연도 말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재무제표 보고 후 주주총회를 열어 철수절차를 승인 받게 되며, 파산신청자는 주주총회 종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등록해야 한다.

철수 등록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철수 신청서(Form for requesting the liquidation)
- 청산양식(Form for the liquidation)
- 법원의 청산고지서 사본(Copy of Court Announcement to Liquidation) (보유 시)
- 철수 동의각서 사본(copy of report for shareholders' meeting)
- 파산 신청자(철수 지원서를 등록하며, 철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해당 시)
- 변호사 증명서 사본 또는 변호사회 구성원이나 감사의 증명서 사본(Copy of Lawyer Certification or Member of Lawyer Council or auditor certification)
- 수수료: 등록 수수료 400บาท, 증명 수수료 120บาท

3) 파산법에 따른 철수

법원은 파산법(Bankruptcy Act)에 따라 기업의 철수를 승인한 후 파산 관재인(Official receiver)을 선임한다. 파산 관재인은 최종 판결을 위해 채무자 자산을 모으고 채권자의 요구를 수렴해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최종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파산 관재인에 의한 채무자 자산조사에 관한 요구 또는 자산 존재 여부 조사
- 만족할 만한 채무자 보증 요구
- 채무자 자산 손실을 우려해 법원의 채무자 자산 관리와 증거 확보 요구

과거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한 파산자의 범위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공개 주식회사에 한정되었으나 2016년 5월 25일부터 개정된 파산법이 적용되면서 자연인, 유한회사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32.97 บาท(2018년 11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95.6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58.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5
비고	태국 내 일일 최저 임금 규정은 존재하나 시간당 최저임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2018년 방콕 1일 최저임금인 330바트를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330/8=41.25바트)을 달러로 환산하여 표기함.				

<자료원 : 태국 중앙은행>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태국의 노동 관련법은 제반 법률과 행정부의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이 되는 법은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이다.

태국법 상 고용계약서에 관한 특별한 규정 또는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서명한 뒤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급여, 급여 지급일, 연차휴가, 비밀유지,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고용기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시간

태국 노동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당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전 또는 건강상 위험한 직종으로 시행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화학물질의 생산, 금속 구조, 지하나 물속, 동굴, 터널 및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서의 작업 또는 위험한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아주 추운 곳이나 아주 더운 곳에서의 작업을 포함한다.

◦ 작업 성격상 교대근무가 연속적인 작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예: 석유산업 등)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1일 12시간, 1개월 28일 이내에서 근무일자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무일수의 반 이상을 휴일로 정해줘야 한다.

◦ 식음료 판매 영업장의 경우(예: 식당) 업무의 성격상 중간에 일시 휴식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루 근로 중 5시간 동안 계속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 합의하에 휴식 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하며, 하루의 총 휴식시간의 합계는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 성격상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면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작업의 진행상 꼭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이 없음을 요구할 수 있다.

초과 근로나 휴일 근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되거나 중도 중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초과 근로와 휴일 근무의 총 시간은 주당 총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가

◦ 연차 휴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6일 이상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노사 합의시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 시행을 다음해로 미룰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병가: 1년에 30일까지 유급병가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3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1급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산 휴가: 산전, 산후를 포함하여 총 90일간(주말 포함)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기본급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병역 휴가: 근로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군에 소집되는 경우 병역휴가(유급)를 낼 수 있으나 고용주는 1년에 60일분 이상의 임금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

해고

태국 노동보호법에서는 간접적으로 노동보호법 119조를 통하여 피고용인의 심각한 과오 등 특정한 경우에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간접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보호법 119조에 따른 심각한 과오로 인한 해고 조건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비리를 저지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절도, 고용주를 폭행 또는 모욕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회사 및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부주의로 고용주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
- 경고장으로써 벌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
- 무단 결근 또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결근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고용되기 전에 지은 죄로 고용된 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근무 중 형사법 위반에 따른 징역을 받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합법적인 해고 예고의 시기는 급여일 기준으로 급여 1회 전에 해야 하며, 해고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소송제기시 법원판결에서 고용주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고 사유에 대한 확실한 근거, 관련된 법 조항, 해고 날짜, 해고권자의 서명 등을 명시한 해고장 발부가 필요하다.

퇴직금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에 따라 고용계약 해지 직전의 기본급 또는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 근속기간 120일 이상~1년 미만: 30일분 이상의 기본급 또는 임금
-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90일분 이상의 기본급 또는 임금
- 근속기간 3년 이상~6년 미만: 180일분 이상의 기본급 또는 임금
- 근속기간 6년 이상~10년 미만: 240일분 이상의 기본급 또는 임금
- 근속기간 10년 이상: 300일분 이상의 기본급 또는 임금

고용계약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도 태국법상 퇴직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자발적 퇴직
- 부정직하게 의무를 수행한 경우
- 120일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고용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 고용주에게 의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적법한 취업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서면경고는 1년간 유효하며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사전 서면경고 없이도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 확정 판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우는 예외)

기타

○ 노사관계위원회

정부, 고용주, 근로자 대표 등이 동수로 하여 구성된 제3기구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노사분규의 심의, 결정, 부당 노동행위 발생시 고용주에게 시정을 강제할 권한, 장관에게 심의가 요청된 노사분규, 파업, 직장 폐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권한 등이 있다.

○ 중앙노동법원

노동분규 조정관이나 노사관계 위원회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정을 의뢰하는 곳이 중앙노동법원이다. 노동법원은 노동관련법, 단체협약, 고용조건의 결정이나 위반사항을 법적으로 다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위원회 대비 구속력이 크다. 법원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면 1심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며, 대법원 최종 판결시 그 결정문을 1심 노동법원에 보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태국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내외국인 차별은 없으나 국제기구 또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 고용된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은 한국의 4대보험료와 비슷한 성격의 기금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법인과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부담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급여의 10%(각각 5%)를 매달 납부해야 하며, 산정 기준 급여는 1,650밋에서 최대 15,000밋이다. 따라서 인당 최대 부담금은 1,500밋으로 법인 부담액 750밋, 근로자 부담액 750밋이 최대 금액이다.

고용보험

태국법상 고용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재보험

근로자보상기금법(Workmen's Compensation Act)에 의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 단,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과 국가기관 공무원, 비영리 기관, 공기업 및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원 등은 재해보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해 줄 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근무 중 사망하였으나 연고가 없는 경우 최소 3일간 시체를 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고용주는 재해 발생 후 15일 이내에 노동부 사회보장국의 보상기금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보험료는 고용주만 납부하며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정해진다. 보험료 청구는 근로자는 자가 비용으로 치료를 우선 받고 90일 이내에 환급을 받거나 기금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국민연금

태국법상 국민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은 태국 내 및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세금 목적의 법인 및 파트너십은 사기업 및 상장기업, 일반 등록기업, 파트너십,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관 및 협회로 정의되며, 일반 형사 및 상법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법인 및 파트너십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수입이 규정되며, 태국의 내국세 코드에 의해서 부과된다.

태국은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을 20%로 고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 순이익 3백만 бат 초과시 20%(순이익 30만 бат~300만 бат 15%)
- SET 상장기업: 순이익의 20%
- 대체투자시장 신규 등록 기업: 순이익의 20%
- 국제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순이익의 10%
- 국제운송담당 외국기업: 총수입의 3%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외국기업: 총수입의 10%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나 배당금 외의 소득이 있는 외국기업: 총수입의 15%

자본 획득은 일반적인 과세 수입으로 취급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비실현 수입 및 손실은 과세 대상 순익 계산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계정하거나 또는 자본 화해 상각할 수 있다. 태국 주식회사는 여타 주식회사로부터 획득한 배당 수입의 50%는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며, 이러한 배당수입이 상장기업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배당 제공 기업이 배당을 받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배당 받는 기업이 배당 기업 주식 25%의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내국세법에 따라 세금 관련 벌금, 과징금 및 벌과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소득세 계산 시 공제대상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비(단, 경상비 중 R&D 비용, 직업훈련비, 지체장애자를 위한 설치비용은 200% 공제)
- 이자(단, 자본준비금에 대한 이자 또는 기업 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
- 세금(단, 태국 정부에 납입하는 CIT, VAT는 제외)
- 약성부채
- 소모비
- 준비기금
- 총 수령액의 0.3% 한도 또는 1,000만 бат 이하의 접대비
- 공공교육기관으로의 기부금,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기부금
- 감가상각비용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조세개정법(Revenue Code Amendment Act) 제 44조 및 장관령(Royal Decree No. 470)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 대상 기간은 태국의 회계연도 기준(전년도 10월~이듬해 9월)이 아닌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 기준은 모든 과세 수입에서 지출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되며 세금은 과세 기준에서 누진율을 적용해 5~35%까지 부과된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세율 및 소득공제 기준 변경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통한 소비 진작,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의 세금 감면을 통한 출산 장려와 고령화사회 대비,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통한 사업가들의 개인소득세 납부 회피를 막고자 한다.

과세 대상은 태국에서 연간 180일 이상을 거주한 개인이며, 과세 기준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획득한 모든 수입(고용, 도급, 저작권, 이자, 배당금 등)과 태국 내로 송금된 소득도 포함된다. 그러나 비거주 개인은 태국 내에서 획득한 소득의 15%를 고정세율로 납부한다.

2018년 현재 적용중인 과세대상 연간 소득 및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 과세대상 소득 0~150,000บาท: 면제
- 과세대상 소득 150,001~300,000บาท: 5%
- 과세대상 소득 300,001~500,000บาท: 10%
- 과세대상 소득 500,001~750,000บาท: 15%
- 과세대상 소득 750,001~1,000,000บาท: 20%
- 과세대상 소득 1,000,001~2,000,000บาท: 25%
- 과세대상 소득 2,000,001~5,000,000บาท: 30%
- 과세대상 소득 5,000,001이상: 35%

개인소득세는 다음연도 3월 마지막 일까지 신청서(PND 90 또는 91)를 작성한 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992년 1월 1일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수입 물품을 포함해 모든 단계별 상업용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세율은 7%이나 부가세율이 0% 이거나 면제되는 품목도 있다. 부가세 시스템 하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원료, 재고, 또는 기타 물품, 또는 사업에 사용된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및 특정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무가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도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부가세 시스템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등록 및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부가세 환급 공급 업체가 규정된 양식에 따른 세금 인보이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내국세 검사원이 세무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였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1992년부터 7%로 인하한 이후 지속적으로 7%를 유지해오고 있다.

부가세 0% 대상 물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상품
- 서비스 수출과 같이 태국 내 비거주인이 사용하는 유가 서비스 또는 서비스 결과물
- 태국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체 그리고 태국 법인체에 0%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소속된 외국 법인체가 수행하는 국제항공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
- 외국 차관 또는 지원 프로젝트 하에서 태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UN, 대사관 또는 등록 영사관에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보세 창고에 운송된 물품

부가세 면제 대상 물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연간 60만 бат 미만의 무역업자
- 공업용 규모로 캔, 용기 또는 포장돼 제조된 식품을 제외한 농산품
- 공업용 규모로 캔, 용기 또는 포장돼 제조된 식품을 제외한 가금 또는 가금제품
- 비료
- 물고기 및 동물 사료
- 식물 및 동물 병충해 또는 질병 방지 또는 박멸용 약품 및 화학제품
- 신문, 잡지 또는 서류류
- 태국 정부, 특정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서비스
- 태국 재무부 내국세국장이 지정한 특정 예술 및 문화 서비스
- 진료, 회계, 변호 또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내국세국장이 정한 자유
- 전문직 서비스
- 지정된 연구 또는 기술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또는 동물원 서비스
- 고용 계약 하에서 고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
- 내국세국장이 지정한 연예인의 공공 서비스
- 내국 운송 서비스
- 항공 또는 해상 이외의 국제 운송
- 고정자산 임대
- 지방정부 당국에 의해서 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특정 물품 및 서비스
- 담배 비제조업자 또는 비수입업자가 태국 담배 전매청에서 제조한 담배의 판매
- 정부 및 적십자의 복권 판매
- 우표
- 정미
- 기타 태국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물품 및 서비스

특별소비세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국내 생산 석유 및 기름제품, 물을 제외한 비알코올성 음료, 미네랄 워터 및 우유, 에어컨, 전구, 크리스털, 10인승 이하의 자동차, 요트 및 유람선, 향수, 화장품류와 특정 유류업종이다. 또한 증류주, 맥주 및 담배에는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소비세법(Excise Tax Act B.E. 2560)이 발효되면서 소비세법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다. 일명 '죄악세(Sin Tax)' 대상인 담배 및 주류 소비세율 산정에 과거 가격 또는 중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장도가격 또는 CIF 금액을 반영하던 것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및 중량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태국 국민들의 건강한 음료 섭취를 위하여 설탕 함유 음료의 소비세를 2년마다 높여 제조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음료 내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태국의 재산세는 12.5%로 주택 및 토지세, 지방개발세로 분류된다. 주택 및 토지세는 상업적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 빌딩,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지방당국이 평가한 자산 가치에 따라 다양하다. 소유주가 직원 거주용, 축산용 및 농작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그 범위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주택 및 토지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왕실이 보유한 궁궐
- 정부가 소유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
-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공병원 및 학교

- 종교건물
- 1년 이상 공실인 빌딩
- 개인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

건물과 토지가 위치한 지역 내 해당 지방정부에 매년 2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후 납부 통지서를 수령 후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불성실 벌금이 200밋이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벌금은 30일 이내 미납 시 2.5%, 두 달 이내 미납 시 5%, 석 달 이내 미납 시 7.5%, 그리고 넉 달 이내 미납 시 10%이며, 그 이후 체납할 경우 지방정부가 몰수해 처분 후 세금을 변제할 권리가 있다.

현 정부는 재산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신 재산세법 발효시점을 2019년 1월 1일로 책정했으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빨라야 2019년 3월 경 발효 예정이다.

태국 국회는 최초로 2015년 5월 22일 상속세(1억 밋 이상 자산 상속 시 10% 부과, 단 부모나 자식이 상속인인 경우 5%만 부과)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2016년 2월 1일부터 상속세법이 발효됐다. 태국 국회는 최초로 증여세 법안도 통과시켜 2016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해당 법은 1년에 1인 이상에게 2,000만 밋 이하 증여 시 5%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태국의 외환규제는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2485(1942)), 그리고 외환관리법 하에 발표된 정부부처 시행규칙(Ministerial Regulation No.13, B.E. 2497(1954))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BOT)은 재무부로부터 외환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외환거래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부로부터 외환거래 허가를 얻은 기업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외환 규제

1) 통화규정

◦ 외국환(Foreign Currency)

외국환은 제한 없이 태국으로 이체하거나 반입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을 수령 받은 사람은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90일 미만의 체류 여행자, 태국인 이민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등이 아닐 경우 외환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은행에 외국환을 매도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을 해야한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만 달러 이상에 상응하는 현금을 태국으로 반입하거나 태국 밖으로 반출할 경우 세관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국내통화(Local currency)

태국으로 바화 현금을 반입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중국 유난(Yunnan지역에 한정)지역,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를 여행하는 자는 최대 2백만 바트까지 반출할 수 있으나, 45만 바트 이상 반출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국가로는 5만 바트를 반출할 수 있다.

2) 외환계좌 개설

2-1) 태국 거주자(Resident)의 외환계좌

태국 거주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외환계좌를 개설 및 유지할 수 있다.

◦ 입금

자금 출처가 명확한 외환은 제한 없이 외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대출받은 외환은 아래 두 종류의 외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은행대출금 상환 등 미래 지불의무가 있는 외환계좌는 미래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환을 입금할 수 있다. 미래 지불의무가 없는 외환계좌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전체 잔고가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외환 현금 및 동전의 입금은 개인당 하루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금

외환의 출금은 예금주의 해외부채 청산, 외환 부채 청산, 동일인의 다른 외환구좌에 입금, 다른 외환으로 환전, 그리고 바화로 환전하기 위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태국 회사가 해외로부터 수출 대금을 외화로 결제 받았을 경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외국에 있는 외환계좌로부터 태국 내 거래당사자의 외환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2-2) 태국 비거주자(Non-resident)의 외환계좌

비거주자는 제한 없이 태국 내 외환계좌를 소유할 수 있다. 태국 거주자로부터의 지불금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은 증빙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입금이 가능하다. 외환계좌 잔액은 자유로이 출금이 가능하다. 계좌는 9개 외국통화로도 개설이 가능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US Dollar(US\$)
- Singapore Dollar(SGD)
- Australian Dollar(AUD)
- Canadian Dollar(CAD)
- Hong Kong Dollar(HKD)
- Japanese Yen(JPY)
- Pound Sterling(GBP)
- Swiss Franc(CHF)
- Euro(EUR)

3) 무역과 서비스

○ 상품 수출입

5만 달러 이상을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환은 수출대금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입목적으로 외환을 구매하거나 외환구좌에서 외환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장은 허가 없이 개설 가능하다.

○ 서비스 교역

5만 달러 이상을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외환은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서비스 비용, 이자, 배당금, 이윤, 로열티 등의 해외 송금은 관련 증빙서류 구비 시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여행 경비 또는 교육비 또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자유로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신용장 개설(Letter of Credit)

해외 수입업자가 발행한 신용장(Master L/C)을 가지고 태국 현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계무역업체 (현지 L/C의 발행주체)가 은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Credit line)를 보유해야 한다. 신용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담보를 설정한다. 이외에는 현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신용한도를 받는 방법이 있다. 무역업체의 경우 특성상 사무실만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별도의 담보 설정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담보자산이 없어 신용한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 L/C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초기에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을 받으면 가능하다. 양도가능 신용장의 경우 중계업자의 신용한도가 없더라도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원하는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해외투자

직접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태국으로 외환을 자유로이 송금 가능하다.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은 360일 이내에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반출 및 해외 부채의 지불은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 시 가능하다.

5) 태국 거주자의 자본 이체

○ 직접투자자와 해외 대출

태국 기업 및 자연인(개인)은 자기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또는 해외 제휴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해 줄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허용된다. 태국 기업의 경우 해외 비제휴 기업에 연간 5,000만 달러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해외 투자 또는 해외로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해외 송금은 외환만 가능하나, 베트남 또는 태국 인접국으로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은 외환과 바화 모두 가능하다.

◦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정부연기금, 사회보장기금 등 기관투자자, 사모펀드를 제외한 뮤추얼 펀드,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 금융기관 및 자산 50억 바트 이상의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법인, 태국 선물거래소(TFEX) 중개인 등은 제한 없이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 또는 기업 투자자는 민간기금 또는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 기타 목적 해외 송금

개인의 자산을 태국인 이민자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연간 100 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공공기관에 기부하기 위한 해외 송금 역시 개인당 연간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개인은 종업원 급부제도(employee benefit plan)의 일환으로 연간 100만 달러까지 해외 유관기업들의 주식 구매가 허용된다. 해외 부동산의 구입은 1인당 연간 5,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자본금 감자 이후 자본금을 한국 본사에 송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빠.어.쩌 No.5, 5) : 자본금 감자 전
-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빠.어.쩌 No.5, 5) : 자본금 감자 후
- 해당 금액에 대한 입금증명서(Credit advice letter)
- 자본금 감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위의 서류와 함께, 은행 지점에서 송금 요청서 및 외환거래신청서(미화 기준 50,000달러 이상의 경우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해외 송금에 대한 신고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은 송금 목적 및 관련 증빙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송금 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을 작성해야 한다. 자금거래 제한국가로 송금은 제한되며 콩고, 코트디부아르, 북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의사항은 BOT의 외환콜센터 + 662-2356-779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6) 지급보증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은 등록 법인의 부동산 또는 현금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해외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단, 태국 내 법인 설립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 회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태국 중앙은행(BOT) 규정 상해외은행의 지급보증으로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통화로 보증서 발급을 진행할 경우 추후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내 은행에서는 보증서 발급에 있어 자국통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은행 간 차이가 있으나, 카시콘 은행에서 입찰 보증서(Bid bond/Tender bond)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3백만 바트 이하의 본드 발행은 100% 현금 보증금 예치시 지정장 결제로 진행이 가능하다. 본드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3개월 이내의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에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보증서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는 예치금을 인출할 수 없다.

보증서 발급 관련 주의점은 보증서 상에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와 상관 없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국 인구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약 6,904만 명이며 성비는 여성이 51.2%, 남성이 48.8%로 여성이 더 많다. 평균 연령은 38.8세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11.4%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태국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다음과 같다.

- 14세 이하 인구: 1,198만 명(17.4%)
- 15세~64세 인구: 4,919만 명(71.3%)
- 65세 이상 인구: 786만 명(11.4%)

연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 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인구 구간은 30~39세로 1만 6,600명에 달하여 전체 고소득자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의 중산층은 2017년 기준 인구의 25.8%에 해당하며, 지역별로는 방콕 및 인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 및 소비가 기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편이다. <자료원 : 유로모니터, 태국 국가통계청>

소비 성향

1) 소비자 특성

- 중산층 증가: 중산층 이상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급소비재, 외식업, 교육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 소득계층별 빈부격차 심화: 태국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큰 나라로 최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득불균형이 큰 나라 3위에 기록되기도 했다(크레딧 스위스).
- 방콕 및 수도권 지역 소비자: 고급소비재 및 서비스 상품의 주요 소비자는 방콕 수도권 지역 거주자이다.
- 높은 가계부채: 태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7년 기준 12조 바트(3,643억 달러)로 GDP의 77.5% 수준이며 총 부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고령화 사회 진입: 태국은 200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1년 고령사회(60세 이상 20% 이상), 2031년에는 초고령 사회(60세 이상 28% 이상)로 진입할 전망이다.

2) 소비 성향

- 재량소비 지출 증가: 고소득 가구의 증가로 기본 생활비 지출보다 재량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즐거움(예: 아이스크림, 스낵 등)과 경험(예: 외식, 여행, 레저, 고급 브랜드)을 주는 고급 소비재들이 대중화 되고 있다.
- 원산지 및 상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가격은 태국 소비자 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태국 소비자들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

인다. 태국 소비자의 선호 브랜드 구매의사는 75%로 베트남(40%), 필리핀(39%) 대비 높은 편이며 또한 원산지에 따라 상품 선호도가 다르다. 태국 소비자는 미국, 유럽, 일본 원산지의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 상품의 선호도도 우수한 편이다.

◦ SNS 마케팅 영향력 확대: 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65.3%)이 브로드밴드 보급률(12.1%)대비 월등히 높은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국가로, 소셜 미디어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온라인 미디어 및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패션 및 뷰티업계에서 일반화 되어 있다.

◦ 대금 결제 수단의 다양화: 최근 신용카드, 직불카드, 온라인 결제(Line Pay, Alipay, Samsung Pay), QR 코드 결제 등 지불 수단이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2017년 기준 태국인 1인당 신용카드 0.29개, 직불카드 0.77개로 증가세를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결제 시에는 현물인도 지급방식(COD; Cash on Delivery)을 가장 선호하여 전체적으로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다.

◦ 편의점과 복합몰 선호 증가: 태국 최대 유통망인 세븐일레븐(7-Eleven)은 2017년 기준 전국 1만 268개의 점포를 보유하여 전체 편의점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태국인들은 더운 나라의 특성상 한 곳에서 쇼핑, 외식, 영화관람, 은행 업무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몰을 선호하며, 멀티 브랜드 전문점을 단일 브랜드 매장보다 선호한다.

3) 쇼핑 시즌

2002년부터 내수 진작과 해외 여행객들의 소비유도를 위해 실시한 '어메이징 타이랜드 그랜드 세일'이 매년 6월~8월 사이에 실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관광 비수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대다수 백화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공항면세점 등에서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상점 및 백화점에서 연말 세일(End of Sale)을 진행하며,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메가 세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태국 정부에서는 3년간(2015~2017년) 연말 내수소비 진작을 위하여 1인당 15,000바트의 상품 구매 또는 여행 등 서비스 상품 구매 시 소득공제를 해쳤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따라 블랙 프라이데이 위켄드(Black Friday Weekend)를 진행하여 3일동안(금~일요일)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대규모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 콘텐츠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국 화장품, 한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상품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은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주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삼성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소비재(화장품 등)의 경우 한국식 화장법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상품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중국산 또는 태국산 제품, 광고에 한국어를 표기하여 한국 상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경쟁국 제품과의 차별성 강조

현지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서유럽, 일본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며, 중국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품질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제품과 대만제품은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편이기는 하나 뚜렷한 특징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어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사양, 성능, AS,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등 경쟁국 제품 대비 차별화된 장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이고 신속한 회신 필요

수출 사절단 혹은 전시회에서 비즈니스 상담 시 한국 업체들이 수출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후속조치(follow-up)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꺼리거나 요청 이메일에 답장을 늦게 보내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어들은 계약 체결 이전에 수출 업체의 신용도, 제품 사양, 수출 이력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한국 업체가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면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결제조건 제시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 혹은 L/C(신용장) at sight(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T/T 결제를 선호한다. 현지 관행상 선금 5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50%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4) 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

태국 사람들은 사업상의 의사결정에 있어 그 진행과정이 많고 속도가 느린 편이다. 사업상의 계획은 대부분 단기성이 강하며 기업의 최고 경영층은 대부분 가족관계이다. 태국에서는 인맥이 매우 중요하데, 화려한 인맥을 가진 사람은 태국인들로부터 존중받으며 외국인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태국의 미소 문화이다. 태국인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화 중 미소를 많이 지으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제스처가 잦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특히 외국인)에게 결례를 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표면상 미소를 많이 짓는 것이므로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심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든 중요한 내용을 서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수기로 메모를 하더라도 주고받은 내용을 요약해 서로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일을 진행할 때마다 ‘당신이 이 안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으냐’,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으냐’, ‘이 내용을 서류로 메모해서 서명해도 좋으냐’라며 하나씩 확인하여 바이어가 그렇다고 동의하면 지체없이 그 자리에서 서류를 만들어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왕과 왕실에 대한 언급

태국은 법률로 왕과 왕실에 대한 불경죄는 엄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며 왕에 대한 불경한 글이나 동영

상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태국 사이버 경찰에 의해 발견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국인들은 왕과 왕실에 대해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꺼린다. 물론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업적을 칭찬하는 대화는 가능하다. 태국 왕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국 왕과 왕비, 공주 등의 왕실 사진을 향해 손가락질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종교에 대한 모독

태국은 불교국가로 일상 생활에 불교가 아주 밀착돼 있다. 불교 행사 기간 중에는 금주를 하고 일반 주점에서도 주류를 팔지 않으므로 술에 취한 행동을 할 경우 현지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모든 불상은 크기와 만들어진 시기에 상관없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 불상에 올라가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선 안된다. 불상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해 공경을 표해야 하며, 만약 불상이나 사당을 만지면 이는 신성한 물건이 더럽혀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승려들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지하철, 버스 등 공공 장소에서 승려의 옆에 앉지 않으며 대개 엘리베이터에도 동승하지 않고 승려가 길을 지나갈 때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또한 민소매 상의, 짧은 반바지, 치마 등을 입고는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법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3) 첫 만남 시 주의할 점

태국인은 비즈니스 첫 만남에 있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친밀감을 주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태국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큰 실례라고 느낄 수 있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친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과한 스킨십을 하는 것 또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태국 왕실이나 종교,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삼가는 것이 좋다.

4) 약속

태국인의 성격은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움에 시간 개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즈니스에서는 정확한 일 처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담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혼잡 등으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연락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상담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담 장소 연락처 또는 태국업체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담 약속은 상담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일수록 사전 약속 기간이 길며 한달 전에 면담 요청 서신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5) 식사

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우리와 비슷하게 한꺼번에 차려먹는 경우가 많다. 주로 맵거나 짭 양념,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음식이 자극적이다.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며 향과 신맛, 특소한 맛이 복합돼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하루 세 끼 중 저녁 식사를 중요시한다. 식사량은 적으며 음료수, 과일, 과자, 떡 등 간식을 즐기는 편이다. 국물이 있는 국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튀긴 국수는 포크와 숟가락을, 생선을 넣은 국수는 숟가락만 사용해서 먹는다. 밥 종류는 접시에 담아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숟가락 하나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크는 접시의 음식을 스푼으로 뜯 때 보조 역할을 하거나 스푼에 붙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음식을 천천히 먹고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또한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국이 있는 음식은 들이마시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 서로에게 간식을 잘 권하고 음식점에서 각자 음식을 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문하여 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 같은 경우, 통상 주문한 음식별로 덜어먹을 수 있는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여 본인의 그릇에 옮겨 먹으면 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사 문화 때문에 태국인들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BBQ, 수끼 음식점을 즐겨 찾는다. 또한 음식을 약간 남기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자신이 배불리 잘 먹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사용한 포크와 숟가락은 5시 25분 방향으로 놓는 것이 좋다. 식사를 초대 받았을 경우 주최자에게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하겠다는 의사표현 대신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6) 선물

관대함, 후함은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일반적으로 태국 비즈니스 미

팅 시 간단한 선물은 서로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데 쓰인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보거나 선물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은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고귀한 것이지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눈앞에서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버린다 해도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선물을 준 자체에 대한 고귀함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물을 거절하거나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값비싼 선물을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사서 보답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태국 공무원들의 경우는 3,000밋(약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선물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너무 고가보다는 적절한 가격대의 선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대상이 남자라면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고급 술을 선물하면 좋아한다. 여자의 경우라면 화장품, 문구류, 액세서리 등이 무난하다. 남녀 공통으로 한국산 차, 파워뱅크, USB,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명함집 등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7) 인사

첫만남에서 대체로 정중한 대화와 많은 유머가 오가지만 사업적 대화나 그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두 번째 만남은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태국 사람들은 아침보다는 오후에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이 좋다. 식사는 사적인 대화가 오가며 시작하는데 이 때 사업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은 결례로 여긴다. 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바닥을 합창한 자세로 목례를 한다. "쌌디캅/쌌디카(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하며 일반적으로 손아래 사람이 위사람에게 먼저 하고, 손윗사람은 같은 자세로 이에 응답한다. 태국에서는 '성'으로 타인을 호칭하는 대신 "쿤"(한국어의 "~씨")을 앞에 넣어 이름을 부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었을 때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김철수씨 = 쿤킴/쿤철수)

8) 복장

대부분의 태국 비즈니스맨은 평상시 양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는다. 냉방 에어컨이 돼 있는 실내에서는 주로 긴팔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이다. 양복 상의는 인사 방문, 리셉션, 세미나 등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출장을 올 때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팔 와이셔츠보다는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비즈니스 상담에 임하는 것이 격식에 어울린다. 그 외 평상복으로는 열대 다습한 기후에 맞게 면 종류의 가볍고 편안한 차림이 적당하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도는 12월 말~1월 초 기간이나 북쪽 산간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얇은 스웨터나 재킷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더 비빔밥: 2011년 태국에서 창업한 프랜차이즈

더 비빔밥(The Bibimbab)은 2011년 태국에서 창업한 한식전문점으로 2018년 12월 기준 태국 내 대형쇼핑몰 등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태국 5대 슈퍼마켓 체인인 센트럴 푸드홀, 탑스 슈퍼마켓, 고메 마켓, 빌라 마켓, 푸지슈퍼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다. 더 비빔밥의 성공요인은 비빔밥 종류 선택이 가능한 메뉴의 모듈화, 전통과 모던함을 접목한 인테리어이다. 더 비빔밥은 태국 내 한식(K-Food) 고급 브랜드화와 한식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김치 패키징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역내로 수출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2) (주)백제: 태국인 기호에 맞는 신제품 개발

라면, 떡과 같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주)백제는 2018년 KOTRA 무역사절단 사업을 통해 첫 수출에 성공했다. (주)백제는 한국 라면이 태국 라면 수입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무역사절단 상담 후 방콕무역관 직원이 수입상에게 제품 샘플을 전달하며 반응을 점검했고, 업체와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주)백제의 태국 시장 진출에 힘썼다. (주)백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태국인들의 기호에 맞춰 기존에 진출한 라면류와 다르게 쌀국수 형태에 다양한 국물 맛을 내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제시했고 태국 수입상과 소비자의 관심을 끌며 진출에 성공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따라서 관광 목적으로 태국 입국시 유효한 여권과 현지 체류 주소 등이 있으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전시회 참가/해외 비즈니스 미팅 출장 등의 목적이 아닌 판촉 행사 개최 등의 목적으로 체류 시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비즈니스 비자인 Non-Immigrant B Visa 발급이 필요하다.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는 약 15~30일 가량이 소요되며, 발급 수수료로 2,000밋 상당(약 6만 6000원)의 원화를 납부해야 한다.

비자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 VISA 신청서
- 가로세로 2.5인치 증명사진
- 박람회 주관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등 증빙 서류

주한 태국 대사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7
- 전화: (02) 795-3098/0095
- 팩스: (02) 798-3448
- E-mail: thaisel@mfa.go.th
- 휴일: 토·일요일, 한국 공휴일
- 운영시간: 9:00~12:00, 13:00~15:30
- 비자 신청 및 발급: 09:00~12:00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태국 세관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담배 200개비(250g), 주류 1병(1리터), 8만 밋(약 26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허용 범위 초과 시 압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국에서 전자담배 반입은 불법이며 담배 10갑 초과 시 보루당 최소 10배 이상의 벌금 부과 사례가 빈번하므로 허용 수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통과하여도 태국 세관은 공항 어디서든지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66-(0)2-247-7537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비고	대사관 긴급연락처는 +66-81-914-5803번 이다.

◦ 재태국한인회

전화번호	66-(0)2-258-0331
주소	Korea Town, Sukhumvit Soi 12, Khlong Toei, Bangkok 10110
홈페이지	http://thaikorean.kr/ko
비고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태국 내 한인 소식 및 동향을 전하고, 태국어 어학당을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 EPS 센터

전화번호	66-(0)2-245-9433
주소	12th FL. Social Security Office Section 3 Building, Ministry Of Labour,
홈페이지	http://hrdkoreathailand.com/
비고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및 기능시험(SKILL-TEST)시험, 외국인 근로자 송출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K-Move해외취업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다.

◦ 한태상공회의소

전화번호	66-(0)2-204-2503
주소	6th Fl. Rajapark Bldg, 163 Asoke Sukhumvit 21 Road, Klong Toey 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홈페이지	http://www.korchamthai.com/

비고	태국 상무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로 주태국 외국인 상공회의소 연합회 및 태국 수상실 직속 기관인 태국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한태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여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	---

○ 한국산업은행 방콕사무소

전화번호	66-(0)2-168-8499
주소	15th 5L Athenee Tower, 63 Wireless Road (Witthayu),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비고	산업은행 방콕사무소는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 태국의 경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했던 1988년에 철수한 뒤 2013년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태국 기업들을 상대로 자금 조달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진출 했다.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

전화번호	66-(0)2-528-7600
주소	44/100 Nonthaburi 1 Rd., Bangkrasor, Muang Nonthaburi 11000 Thailand
홈페이지	http://www.dbd.go.th
비고	사업자 등록, 사업개발 및 촉진,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육성,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사업 육성,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

전화번호	66-(0)2-202-4000
주소	75/6 Rama 4 Rd.,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홈페이지	http://www.diw.go.th
비고	공장법에 따른 공장 등록, 기계등록법에 따른 기계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태국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

전화번호	66-(0)2-553-8111
주소	555 Vibhavadi-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홈페이지	https://www.boi.go.th
비고	1966년 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산하 기관으로 태국내 투자 유치 또는 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태국 유일의 투자관련 기관이다.

◦ 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 (OSOS)

전화번호	66-(0)2-209-1100
주소	18th Floor, Chamchuri Square Building, Pathumwan, Bangkok 10330
홈페이지	http://osos.boi.go.th
비고	태국 투자청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이다.

◦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AND BOARD OF TRADE OF THAILAND)

전화번호	66-(0)2-018-6888
주소	150 Ratchabophit Rd, Khwaeng Wat Ratchabophit, Khet Phra Nakhon,
홈페이지	https://www.thaichamber.org
비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2.97THB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7
2	식품	비빔밥	1인분	7.6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7.6
4	식품	신라면	1봉지	1.4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2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5
8	의료	항생제	12정	1.8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2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5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1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1.2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8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7.6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3.8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7.6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9.3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123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4

<자료원 : 태국 중앙은행, Tops Supermarket, 업체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밧(Baht)이며, 외국환으로는 THB로 표시된다. 지폐는 20, 50, 100, 500, 1,000밧의 5종류가 있으며, 동전은 1, 2, 5, 10밧이 있다. 밧(Baht)보다 작은 단위로 싸탕(Satang)이 있으며, 25, 50 싸탕의 2종류가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업무시간 중 가능하나, 공식적인 곳에서의 환전은 적용 환율이 비교적 낮아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중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슈퍼리치(Super Rich)라는 사설 환전소 체인이 환율이 좋고, 주요 쇼핑 및 관광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어 편리하다는 이유로 태국인 및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환전시에는 여권을 지참하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식당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결제시 수수료를 받기도 하므로 여행지역이 방콕 및 중심가가 아니라면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이중 결제, 카드 정보 누출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VISA나 Master Card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멕스(American Express), JCB, Union Pay 신용카드 소지자는 이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물어봐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취약하고, 방콕의 경우 차량 대비 도로 사정이 충분하지 못해 세계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 속한다. 그러나 방콕 시내의 주요 관광명소나 쇼핑센터는 지상철인 BTS와 지하철인 MRT가 연결되어 있거나,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 관광하는 것이 저렴하고 편리하다.

버스

태국의 시내버스는 크게 에어컨 버스와 에어컨이 없는 버스로 나눌 수 있다.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무료이며, 일반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버스사양, 종류, 이동구간에 따라 6.5~11밧(0.2~0.3달러)까지 다양하다. 주간버스 운행시간은 5시~23시이다.

방콕 시내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방콕대중교통공사(BMTA; Bangkok Mass Transit Authority)이며, 상세 요금정보 및 원정액원 등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bmta.co.th>)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방콕 시내 버스노선 정보는 https://www.transitbangkok.com/bangkok_buses.html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택시

방콕은 한국에 비해 택시를 잡기가 쉽고, 합승을 하지 않는다. 방콕의 택시는 모두 미터기가 있어 요금을 흥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부 변화가에서 택시기사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 흥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말썽의 소지가 있으므로, 택시에 탄 다음, 바로 미터기를 켜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택시의 기본 요금은 35밧(1.1달러)이며, 공항-시내 간 이동 시 고속도로 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는데, 해당 비용은 승객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은 그랩(Grab)이다. 최근에는 태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Line)에서도 기존에 있던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라인맨(Line Man)을 활용하여 택시를 호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철, 지하철

1999년 12월에 개통된 지상철(스카이 트레인)은 23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7.6Km로 짧지만 방콕 중심가에 근무하는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는 내셔널 스터디움과 방와를 운행하는 실롬라인과 모치에서 삼룽을 연결하는 수쿰 윗라인 두 가지가 운행 중이다. 시암역에서 실롬선과 수쿰빋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실롬라인은 05:30~00:48 (방와 행 기준), 수쿰윗라인은 05:15~00:51(삼룽 행)이며, 요금은 거리에 따라 16-44밧 사이이다. 표는 동전으로 교환하여 자동 판매기에서 1회권을 발권하거나, 판매소에서 1일권을 발급받거나, 월 정액권 구매, 교통카드(Rabbit Card)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선도는 BTS 홈페이지(<http://www.bts.co.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콕의 지하철은 MRT라고 불리우며, 2004년 7월 3일부터 개통되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 총 43km에 35개역을 갖추었으며, 현재 블루라인과 퍼플라인이 운행 중이나 지속적으로 신규 노선 및 노선 확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블루라인은 방콕의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서울역의 역할을 하는 후알람퐁역과 방쓰역을 연결하고 있다. 퍼플라인은 2016년 8월부터 운행된 노선으로 방콕의 북서쪽인 방쓰와 논타부리를 연결하고 있다. 지하철의 운행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며 어른 기준 16-42밧 사이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간격, 그외의 시간대에는 10분 이하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시발역(Hua Lamphong 역)에서 종착역(Bang Sue역)까지의 편도 운행시간은 약 30분이다.

공항철도

수완나폼 공항에서 방콕 시내로 이동 시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은 공항철도(Airport Rail Link)이다. 다만, 짐이 많을 경우 철도 내부가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공항철도는 수완나폼 공항 지하1층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표는 지상철과 마찬가지로 동전으로 교환하여 자동 판매기에서 토큰 형태의 표를 발권하여 사용한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며 15밧~45밧 사이이다. 공항철도는 수완나폼 공항역에서 파야타이(Phaya Thai)역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각 종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6분이다. 다만 열차 배차시간 간격이 넓으므로, 공항철도를 이용할 시 일찍 역에 도착하는 편이 좋다. 파야타이역에서 시암, 아속, 프롬퐁 등 방콕 시내로 가는 지상철로 환승 가능하며, 페차부리(Phetchaburi)역에서는 지하철(MRT)로 환승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다. 통신

핸드폰

전화를 신청할 때는 거주 중인 도시의 관할 전화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집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선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태국 최대 유선통신업체인 TOT에 따르면, 유선전화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임대차 계약서의 지참이 필요하며, 전화 설치비 3,350밧(103달러)가 소요된다. 월 유선전화 가입비는 최저 100밧(3달러)이며, 분당 전화 사용료는 3밧(0.1달러) 수준이다.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 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어, 이동전화만 신청하는 소비자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 서비스는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여권을 지참하고 신상정보를 기록 후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의 편의점을 통하여 카드 충전이 가능하다는 편리성 때문에 관광객들 및 태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후불방식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권, 노동허가증, 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여 주재원 등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태국의 3대 무선통신업체는 AIS, DTAC, TRUE가 있으며, 쇼핑몰 등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TOT, AIS, True 등)들이 TV+인터넷+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590~1,590밧(18~49달러)이다. 각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에는 약 일주일의 소요된다.

라. 관광명소

◦ 왕궁(Grand Palace)

도시명	방콕
주소	Na Phra Lan Road, Grand Palace, Phranakorn,
운영시간	08:30~15:3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방콕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태국 종교건축과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현 짜끄리 왕조를 창시한 라마 1세가 1782년 건립했으며, 왕궁 입구에서 정면에 에메랄드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왓 프라깨우가 보이며, 왼쪽의 황금탑, 프라 씨 라따나 제디도 명물이다. 종 모양의 제디 안에는 부처의 사리가 모셔져 있으나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왕궁 내 라마 4세가 거주했던 궁전인 마하 뿌라삿도 볼거리로 영화 '왕과 나'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비고	이메일: ticket@palaces.mail.go.th 홈페이지: https://www.royalgrandpalace.th/en/home 입장료: 태국인은 무료, 외국인은 500밧(baht)

◦ 왓 아룬(새벽사원)(Wat Arun(Temple of Dawn))

도시명	방콕
주소	158 Thanon Wang Doem, Khwaeng Wat Arun, Khet Bangkok Yai, Krung Thep Maha Nakhon 10600
운영시간	08:30~17:3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새벽 사원으로 불리며, 태국의 10번 동전에 그려져 있는 사원이기도 하다.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조형물이자 방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탁신 왕이 건립한 104m 높이의 탑이 유명하다. 왓아룬 이라는 이름은 인도의 새벽 신인 아루나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탑이 햇빛을 받으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은 중국 선박의 발라스트로 사용되던 도자기 조각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비고	입장료: 50บาท

◦ 왓 프라깨우(에메랄드 사원)(Wat Phra Kaew)

도시명	방콕
주소	Na Phra Lan Rd, Khwaeng Phra Borom Maha Ratchawang, Khet Phra Nakhon, Krung Thep Maha Nakhon 10200
운영시간	08:30~15:3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에메랄드 사원으로 불리는 왓 프라깨우는 라마 1세때 만들어진 왕실 사원으로 60cm 크기의 에메랄드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에메랄드 불상은 원래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 치앙라이, 치앙마이, 위앙짠(비엔티안)을 거쳐 방콕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에메랄드 불상은 1년에 3번(3, 7 11월)에 황금 옷을 갈아입히는데, 국왕이 직접 행차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벽에는 악마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신의 이야기인 라마끼엔(Ramakien)도 그려져 있다.
비고	왕궁(Grand Palace)과 같이 입장이 가능하다.

◦ 아시아티크(Asiatique)

도시명	방콕
주소	2194 Charoenkrung Road, Wat Phrayakrai District, Bangkor Laem, Bangkok 10120
운영시간	16:00~24: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1907~1947년에 지어진 짜오프라야 강변의 창고유역을 개조한 지역으로 1,500개 이상의 상점, 무에타이 경기장, 40개 이상의 레스토랑, 관람차 등이 들어서 있어 태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 암파와 수상시장(Amphawa Floating Market)

도시명	사뭇송크람
주소	Amphawa, Amphawa District, Samut Songkhram 75110
운영시간	금, 토, 일 14:00~20:00 운영
휴무일	월요일~목요일은 휴무이다.
명소소개	방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암파와 수상시장에가면 나룻배를 저으면서 태국식 디저트, 국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구경할 수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밤에는 보트를 타고 반딧불이 투어를 하면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자료원 : 태국관광청(www.tourismthailand.org) 등>

마. 식당

- 현지식당

o 반카니타(Baan Khanitha)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258-4128
주소	36/1 Soi Sukhumvit 23, Sukhumvit Rd., Khwaeng Khlong Toei Nuea, Khet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20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1993년에 오픈한 태국요리전문점으로 20년동안 최고의 태국 식당으로 꼽히고 있으며, 2018년 태국 미슐랭 가이드에 베스트 태국 전통식당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비고	- 웹사이트: https://www.baan-khanitha.com/ - 방콕시내에 5개의 식당이 있으며, 크루즈도 보유하고 있다.

o 블루 엘리펀트(Blue Elephant)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673-9353
주소	233 S Sathorn Rd, Khwaeng Yan Nawa, Khet Sathon, Krung Thep Maha Nakhon 10120
가격	20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6시~오후 10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1980년에 오픈한 최고급 태국요리전문점 중의 하나로 쿂� 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비고	- 웹사이트: https://www.blueelephant.com - 방콕에 1개 푸켓에 1개의 지점 보유

o 싸바이자이(Sabaijai)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714-2622
주소	87 Sukhunvit 63, Ekkamai 3 Alley, Khlong Tan Nuea,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7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10시 30일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태국 이산지역(북동부) 지역 음식 전문 식당이다
비고	- 웹사이트: http://www.sa-bai-jai.com/ - 오리지널 식당은 1군데만 있으나 인기가 많아 싸바이자이 사칭 레스토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쏘분 시푸드(Somboon Seafood)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233-3104
주소	169, 169 / 7-12 Thanon Surawong, Khwaeng Suriya Wong, Khet Bang Rak, Bangkok 10500
가격	10USD 이상
영업시간	오후 4시~11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1969년에 오픈한 태국 해산물 전문식당으로 커리페이스트에 순살 게요리를 담아낸 부 팟퐁커리 등이 유명하다.
비고	- 웹사이트: www.somboonseafood.com/ - 방콕시내 8개의 지점 보유

◦ 사워이(Savoey)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020-7462
주소	120/ 1/4 Sukhumvit 26 Alley, Klongton Klongtoey, Bangkok 10110
가격	10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태국 해산물 전문식당이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명가(Myeong-ga)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229-4658
주소	2/21 Sukhumvit Rd, Khlong Toei Nuea,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7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당으로 태국 주요 인사들이 다수 방문한 바 있다.

◦ 화신(Hwashin)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653-1320
주소	2/21 Sukhumvit Rd, Khlong Toei Nuea,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7USD이상
영업시간	오전 10시~새벽 6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고기 전문 한식당이다.

◦ 장원(Jangwon)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251-2636
주소	2/21 Sukhumvit Rd, Khlong Toei Nuea,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7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9시~오전 12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식당이다.

◦ 호박식당(Hobak)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039-4945
주소	2/21 Sukhumvit Rd, Khlong Toei Nuea,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7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새벽 6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포장마차 분위의 한식당이다.

◦ 조방낙지(Jobang Nakji)

도시명	방콕
전화번호	+66-2-653-3936
주소	2/21 Sukhumvit Rd, Khlong Toei Nuea, Watthana, Bangkok, 10110
가격	7USD 이상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한국식 회가 그리울 때 찾을 수 있는 생선회 전문점이다.

〈자료원 : 교민잡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컴파스 스카이뷰 호텔 수쿰윗(Compass SkyView Hotel Sukhumvit 24)

도시명	12 Road Sukhumvit 24 Alley,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0)2-011-1111
홈페이지	https://www.compasskyviewhotel.com/
숙박료	120~220 USD
소개	◦ 지상철인 BTS Skytrain Phrom Phong 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 도시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을 갖춘 세련된 객실에는 미니 바, 무료 Wi-Fi 인터넷 및 평면 TV와 차/커피 메이커가 있다.

◦ 홀리데이인 방콕 수쿰윗(Holiday Inn Bangkok Sukhumvit)

도시명	방콕
주소	1 Sukhumvit 22, Bangkok, 10110 Thailand
전화번호	+ 66-(0)2-683-4888
홈페이지	https://bangkoksukhumvit.holidayinn.com/
숙박료	70~193 USD

소개	◦ 변화 한 쇼핑, 유흥가 및 비즈니스 지구 인 수쿰윗 (Sukhumvit)의 중심부에 위치 ◦ 아속(Asoke) 및 프롬퐁 (Phrom Phong) 지상철(BTS) 역이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방콕의 모든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 수완 나품 국제 공항(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과 돈므앙 공항(Don Muang Airport)은 까지 30 분~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 많은 다국적 기업이 위치한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15분 이내에 한국인통역이 가능한 고급 병원인 사미 티벳 병원(Samitivej Hospital)과 범룽랏 병원(Bumrungrad Hospital)이 있다. ◦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특전은 맞춤 도착 및 출발, 아침 식사, 가벼운 다과, 개인 회의실, Wi-Fi 및 저녁 카 나페 및 칵테일 이용이 가능하다. ◦ 객실과 호텔 내부 공공장소에서 무료 Wi-Fi 접속 가능
----	---

◦ 소피텔 방콕 수쿰윗(Sofitel Bangkok Sukhumvit)

도시명	방콕
주소	189 sukhumvit road, soi 13-15, Watthana,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0)2-126-9999
홈페이지	https://sofitel.accorhotels.com/
숙박료	170~1,571 USD
소개	◦ 활기찬 스쿰빗 로드 위에 위치한 소피텔 방콕 스쿰윗(Sofitel Bangkok Sukhumvit)은 방콕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는 호텔이다. 상업 및 금융 지구와 고급 쇼핑 지역이 인접한 5성급 호텔 로, 탁 트인 도심 전망을 갖춘 345개의 아름다운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 수완나품 국제 공항까지는 30km이며 지하철과 스카이트레인 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 지상철인 BTS SkyTrain 나나(Nana)역 및 아속(Asoke)역 인근 스쿰빗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호텔이다.

- 게스트하우스

◦ 프라이빗 라용(Private Rayong)

도시명	라용
주소	105/1 Moo 2, Noen Phra A. Muang Rayong, Rayong 21000
전화번호	+66-85-115-9053
숙박료	61~167달러
소개	태국 동부 유명 관광도시 중 하나인 라용지역에 위치한 해변가에 위치한 고급 게스트하우스 성격을 띤다.
비고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Hotel-Resort/PrivateRayong-

◦ sawadi 게스트하우스 더 오리지널(Sawatdee Guesthouse the Original)

도시명	방콕
주소	71 Thanon Si Ayutthaya Dusit Vachiraphayaban Dusit 10300 Bangkok Thailand
숙박료	16~23달러

소개	젊은이들의 거리인 카오산 로드에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로 숙소 내 레스토랑이 위치해 있으며 숙소 전 지역 와이파이(Wifi) 사용이 가능하다.
비고	홈페이지: https://sawatdee-guesthouse-the-original-th.book.direct/en-us 이메일: sawatdeeguesthouse@gmail.com 부킹닷컴(Booking.com)에서 방콕 시내 10대 게스트하우스로 추천

◦ 차나 플레이스(Chana Place)

도시명	치앙마이
주소	11 Soi 7 Sam Lan Rd. T.Phra Singha A.Muang, 50200 Chiang Mai, Thailand
전화번호	+66-53-282-808
홈페이지	https://www.chanaplace.com
숙박료	18~33달러
소개	숙소 전지역 와이파이(Wifi)서비스 제공, 객실 내 에어컨 설치, 케이블 TV 채널이 있는 TV가 비치되어 있다. 숙소의 위치가 유명 관광지 및 공항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숙소에서 치앙마이 관광명소 중 하나인 Saturday Walking Street까지 500m 이며, 제디 루앙 사원(Chedi Luang Temple) 까지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치앙마이 공항까지 2Km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비고	이메일: choonna_rk@hotmail.com

〈자료원 : www.booking.com〉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여행경보 1단계로 여행 유의 국가이나, 남부국경지대인 송클라, 알라, 파타니, 나라티왓 주는 반정부 소요사태, 폭동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적색경보(철수권고) 지역에 해당한다. 2014년 5월 군부 집권으로 인해 전반적인 치안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 관광명소 등에서의 절도, 소매치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당국에 신고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580-086으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거나 분실장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 전화번호 1155)를 방문하면 되며, 관할경찰서에서는 태국어로, 관광경찰서에서는 영어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준다.

분실신고서가 작성되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경찰 분실신고서(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복사본 제출), 여권 분실신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재발급 사유서, 주재국 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 서약서(분실 여권 사본 및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수수료: 1,696밋(만 18세 이상), 1,440밋(만 8세~18세 미만), 1,056밋(만 8세 미만)
- 전자여권 발급 소요 시간: 약 2주 소요(단,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은 유동적)

전자여권을 수령한 뒤 전자여권과 경찰분실신고서 원본을 지참하고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입국기록 등 태국비자를 신규여권에 옮겨 받으면 된다.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99
- 범죄 신고: 191
- 의료: 긴급의료지원 요청 +62-2-207-6000, 앰불런스 서비스 1691, +66-2-354-8222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거주형태(콘도/아파트/타운하우스) 결정

주택 형태는 일반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구 및 비품이 비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조건에 맞춰 구할 수 있다. 아파트는 한 명 또는 회사가 전체를 관리하며 임대하는 형태이고 콘도미니엄은 한국과 같이 다수의 소유주가 있어 개별로 임대하는 형태이다. 타운하우스는 주택과 비슷한 형태이다. 한국인 및 주재원 가족들은 콘도를 가장 선호하기는 하지만 공동관리비, 전기료, 시설물 하자 수리, 보증금 환급 등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 후 거주 형태를 결정하면 된다.

2) 주택 검색

방콕 거주 한국인들은 대개 교민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한인 운영 부동산을 이용하여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으로 주택을 물색하고 싶다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인 DD Property (www.ddproperty.com/en), RentHub(<http://www.renthub.in.th>), Hipflat(<http://hipflat.co.th>) 등에 접속하여 지역/예산 범위/방 갯수 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검색하면 된다. 검색 후 마음에 드는 물건을 포스팅한 업체 또는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주택 방문 일정을 잡으면 된다. 또는 부동산 중개 체인인 Century 21 등에 접속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주택 임대 과정

○ 방문 확인

방콕 도심 지역의 경우 주택 임대 수요가 높아 며칠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임대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전에 부동산 담당자와 매물 여부 확인 후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 태국은 세입자가 이미 이사한 상태의 빈 집을 매물로 놓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업자와 약속만 되면 매물 확인을 할 수 있다.

○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임대료 협의 후 계약 체결

제시된 임대료가 예산에 맞을 경우 직접 방문해 주위 환경, 편의시설, 교통 등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경우 임대료를 협상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낮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인 또는 주인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순수 임대료 외에 공동 관리비, 가구 및 비품 임대료로 이루어진다. 임대는 보통 1년 계약에 2개월치 보증금 선납이 적용된다. 6개월 계약도 가능하나 6개월 계약 시 임대료가 더 비싸질 수 있으며 집주인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다.

콘도미니엄의 렌트 비용은 매우 다양한 편이며, 새로 지은 콘도와 오래된 콘도의 방 크기 및 렌트 비용의 차이가 매우 크다. 방콕 도심의 외국인 밀집 지역의 경우 대부분 최소 월 3만 бат(913달러)선에서 렌트가 가능하며, 가족단위로 머물기 적합한 콘도 렌트비는 통상 월 5~10만 бат(1,522-3,045달러)선이다.

방콕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라차다 같은 지역도 편리한 교통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주택 소유가 허가되지 않고 있으며 콘도미니엄 구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임대기간 만료 후 퇴소 시 주의사항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주택 손상 부문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

혹 소유주가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시설물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 전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증금 환급 시 소유주가 꼼꼼히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원상복구비를 예상해야 한다. 소유주가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등 후불로 지급되는 공과금이 납부됐는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보통 1~2개월 후에야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면 보증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국 귀환, 사업장 이동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별도로 있음을 고려해 원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 발생 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화

전화 신청은 TOT를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신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집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선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어 이동전화만 신청하는 소비자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업체(True, AIS)에서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를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사본, 거주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며 전화선 설치 요금으로는 3,350~3,700บาท(102~113달러)이 든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20V, 110V이 모두 사용되지만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태국 주파수는 50Hz이나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대형 가전의 경우 50Hz/60Hz 겸용이 아닌 제품을 현지에 가져와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임대해서 정수기 물을 마셔야 한다. 배달 생수는 스프링클(Sprinkle), 크리스탈(Crystal) 브랜드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정수기 임대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웅진코웨이, 청호 나이스 등을 많이 이용한다. 정수기 임대 시 월 정액료를 납부하고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확인 및 필터 교체를 해준다. 태국인들은 주로 수도꼭지에 정수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며 태국 브랜드 및 외국계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태국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 주재원들은 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 태국에서 중고차 가치가 좋은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로, 그 중에서도 태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요타(Toyota), 다음으로 혼다(Honda) 차량이 선호된다.

신차 구매 시에는 원하는 브랜드, 차종, 예산을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딜러샵에 방문하여 관심 차량을 시승해보고 구입하도록 한다.

차량 할부 구입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외국인의 차량 할부 구매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차량 구입 시 보통 차량 가격의 10~30% 가량을 납부한 후 차액에 대해 할부 납부(12개월~72개월, 대개 48개월)가 가능하나, 여권 사본, 적격 체류자격 허가(비자)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및 대사관 발급 거주확인서, 보증인(태국인)이 필요하다. 계약 차량 및 할부 납입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가감될 수 있다. 태국인 보증인으로부터 징구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사본, 거소등록증, 3~6개월치 은행잔고 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이 있다.

연리는 자동차 브랜드, 구입 시기마다 다르다. 전체 차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고 매월 균등 납부하도록 돼 있어 실제 할부 금리가 높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을 시 일시불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차량가격

태국은 자국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가격이 비싼 편이다. 태국인이 선호하는 대표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및 혼다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도요타: www.toyota.co.th
- 혼다: www.honda.co.th/honda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영문으로 된 경우)이나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발급, 무료)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중 하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거주 확인서, 대사관 발급, 수수료 17บาท), 건강진단서(태국 병원 또는 일반 클리닉 발급), 여권 원본 및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태국 도로교통국에 제출하고 적성 검사를 받으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최초 태국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신청 시 건강진단서와 노동허가증을(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구비해야 한다. 재갱신 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태국에서 이용가능한 한국계 은행은 없으며, 태국 주요 시중은행 3개를 아래와 같다.

- 카시콘은행(Kasikorn Bank): 1945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2018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987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 시중은행중 인터넷 및 모바일 banking 계좌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다. 또한 한국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세안 역내 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 방콕은행(Bangkok Bank): 1944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2018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163개의 지점을 보유하여 태국 시중은행 중 지점수가 가장 많은 은행이다.

- SCB은행(Siam Commercial Bank): 1906년에 설립된 최초의 태국 은행으로 2018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109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1) 거주자 계좌 개설

거주자 계좌(Resident Account)로 개설 가능한 예적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 계좌(개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과 노동 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단, 지점에 따라서 신원 및 거주지가 확실한 경우에만(거주지 임대 계약서 제시)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계좌 개설을 명시한 이사회 회의록(The minutes of board meeting)
- 사업자 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 Memorandum
- 법인도장 등록증(Seal registration)
-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주주 명부(List of shareholders)
- 회사대표 여권사본 및 노동허가증, 20% 이상 주식 소유자의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사본

2) 비거주자용 계좌(Non Resident Account)

비거주자용 계좌는 태국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태국 내 투자를 원하는 외국 법인이 개설 가능한 계좌이다. 바화 또는 9개 외국통화 US Dollar(US\$), Singapore Dollar(SGD), Australian Dollar(AUD), Canadian Dollar(CAD), Hong Kong Dollar(HKD), Japanese Yen(JPY), Pound Sterling(GBP), Swiss Franc(CHF), and Euro(EUR)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태국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 규정에 따른 계좌 개설 및 자금의 송금 및 수금이 가능하나, 시중은행은 비거주자 계좌의 잔고를 매일 중앙은행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에서 실제 개설은 상당히 까다롭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시중은행의 본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은 사용할 수 없다.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은 신분증 및 해외 소재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태국 중앙은행이 정한 해외 본사 관련 발급 서류를 공증 및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인증 받고 다시 태국의 외무부에서 인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3) 외화계좌 개설(거주자/비거주자)

외화계좌는 특정 외화로 수입 및 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불필요한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및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은행에 따라 10~14개 외국환(US\$, SGD, AUD, CAD, HKD, JPY, GBP, CHF, EUR, CNY, NZD, DKK, SEK, NOK)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Kasikorn bank 10개, Bangkok Bank 14개), 거주자 계정과 비거주자 계정 모두 개설 가능하다. 외화계좌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형태로 개설이 가능하며 최초 개설 금액은 개인의 경우 1,000달러(기타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 법인의 경우는 5,000달러(기타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최대 예치 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태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500만 달러까지 예치가 가능하나 추후 지불 용도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외화계좌는 모든 은행 지점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한 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니스트 국제학교(NIS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방콕
커리큘럼	1992년에 설립된 국제학교로 태국 최고의 국제학교 중 하나이며, 국제학력평가 시험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준비가 가능한 학교이다. 초등학교 이상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EAL 수업을 들어야 하며, 입학금으로 26만 5,000바트를 납부해야 한다.

학비	- 유치원: 515,500 бат - 초등학교 1학년: 660,700 бат - 초등학교 2-6학년: 698,900 бат - 중학교: 791,600 бат - 고등학교 1-2학년: 860,200 бат - 고등학교 3학년: 937,900 бат
홈페이지	https://www.nist.ac.th/
비고	- 전화: +66-2-017-5888 - 이메일: nist@nist.ac.th

◦ 방콕 파타나 학교(Bangkok Patana School)

도시명	방콕
커리큘럼	1957년에 설립된 영국계 국제학교로 방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환불이 되지 않는 입학금은 25만 бат이다.
학비	- 유치원: 421,500-526,500 бат - 초등학교 1-2학년: 613,000 бат - 초등학교 3-6학년: 642,200-661,000 бат - 중학교: 679,600 бат - 고등학교: 773,800-860,200 бат
홈페이지	https://www.patana.ac.th/
비고	- 전화: +66-2-785-2200 - 이메일: admissions@patana.ac.th

◦ 방콕 프렙 국제학교(Bangkok International Preparatory and Secondary School)

도시명	방콕
커리큘럼	2003년에 설립된 국제학교로 영국계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는 톤로 캠퍼스에서, 중고등학생은 온넛 캠퍼스에서 학습한다. 입학금은 학년에 따라 다르며 40,000бат-140,000бат 사이이다.
학비	- 유치원: 460,000-482,000 бат - 초등학교 1-2학년: 496,000 бат - 초등학교 3-4학년: 515,000 бат - 초등학교 5-6학년: 520,000 бат - 중학교: 540,000 бат - 고등학교 1-2학년: 578,000 бат - 고등학교 3학년: 602,000 бат 입학금은 학년에 따라 다르며 40,000бат-140,000бат 사이이다.

홈페이지	https://bkkprep.ac.th/
비고	- 전화(초등 캠퍼스): +66-2-260-7890 - 전화(중고등 캠퍼스): + 66-2-700-5858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방콕 크리스찬 컬리지(Bangkok Christian College)

도시명	방콕
커리큘럼	태국어 커리큘럼과 영어 커리큘럼 보유
학비	태국어 프로그램 - 초등학교: 1년 4만~8만 бат - 중고등학교: 4만~6만 4000бат
홈페이지	http://www.bcc.ac.th/en/
비고	- 주소: 35 Pramuan Road, Silom,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 전화: (+66) 2-637-1852 - 이메일: bcc_christian@bcc1852.com

○ 어썸션 컬리지(Assumption College)

도시명	방콕
커리큘럼	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프로그램(Bilingual Program)
학비	태국어 프로그램 학비 초등학교: 185,800~205,500бат
홈페이지	http://www.assumption.ac.th/
비고	- 주소: 26 Soi Charoenkrung 40, Bangrak, Bangkok, Thailand 10500 - 전화: 0-2630-7111-25 - 이메일: webmaster@assumption.ac.th

○ 사라삿 위탯 숙사(Sarasas Witaed Suksa School)

도시명	사뭇 프라칸
커리큘럼	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프로그램(Bilingual Program)
학비	- 유치원: 35,000~60,000бат - 초등학교: 67,000~68,000бат - 중고등학교: 65,500~67,500бат
홈페이지	http://www.sws.ac.th/eng/contact.index.php

비고	- 주소: 308 Moo 10, Naiklongbangplakot Prasamut Chedee, Samut Prakarn, Thailand 10290 - 전화: (662) 0-2815-7540 - 이메일: http://www.sws.ac.th/eng/contact.form.php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보내기 가능)
----	--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마. 병원

◦ 범룽랏 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도시명	방콕
주소	33 Soi Sukhumvit 3, Khwaeng Khlong Toei Nuea, Khet Watthana,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2-066-8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한국인 통역 보유,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가장 많이 하는 병원임. - 웹사이트: https://www.bumrungrad.com/

◦ 사미티벳 병원(Samitivej Hospital)

도시명	방콕 및 태국 주요 도시
주소	133 Klang Alley, Khlong Toei Nuea, Khet Watthana,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2-022-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한국인 통역 보유, 태국 최대 의료그룹인 BDMS 그룹 산하의 병원이다. - 웹사이트: https://www.samitivejhospitals.com/

◦ 방콕병원(Bangkok Hospital)

도시명	방콕 및 태국 주요 도시
주소	99 Rama IX Rd, Khwaeng Bang Kapi, Khet Huai Khwang, Krung Thep Maha Nakhon 10310
전화번호	+66-2-202-9999
진료과목	- 한국인 통역 보유, 태국 최대 의료그룹인 BDMS 그룹 병원이다. - 웹사이트: https://www.bangkokhospital.com/
비고	한국인 통역 보유, 태국 최대 의료그룹인 BDMS 그룹 산하의 병원이다.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엠파리엄(Emporium)

도시명	방콕
주소	622 Sukhumvit Rd,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홈페이지	https://www.emporium.co.th/en/
비고	한인 및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쿰윗 지역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 센트럴 백화점(Central)

도시명	방콕
주소	027 Phloen Chit Rd, Khwaeng Lumpini, Khet Pathum Wan, Bangkok 10330
홈페이지	http://www.central.co.th/
비고	태국 최대 백화점 체인으로 전국 22개의 백화점 보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 더 몰(The Mall)

도시명	방콕
주소	3522 Lat Phrao Rd, Khwaeng Khlong Chan, Khet Bang Kapi, Bangkok 10240
홈페이지	https://www.themall.co.th/
비고	더 몰 쇼핑센터는 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 식품점

◦ 꼬렁띠이 시장(Khlong Toei Market)

도시명	방콕
주소	Kasem Rat Rd, Khwaeng Khlong Toei,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채소 등 각종 식료품
비고	한국인들 및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쿰윗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이다.

◦ 빅씨(Big C)

도시명	방콕 및 주요도시
주소	2929 Rama 4 road,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채소, 베이커리, 반조리식품 등 각종 식료품
비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형태로 전국에 분포해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마트 내에 레스토랑, 옷가게 등 상점도 다수 입점해 있다.

○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

도시명	방콕 및 주요도시
주소	300 Rama IV Rd,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채소, 베이커리, 반조리식품 등 각종 식료품
비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형태로 전국에 분포해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마트 내에 레스토랑, 옷가게 등 상점도 다수 입점해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버진 액티브 타일랜드(Virgin Active)

도시명	방콕
주소	651/1 Soi Promm Mit, Khwaeng Khlong Tan Nuea, Khet Watthana, Bangkok 10110
홈페이지	https://www.virginactive.co.th/
소개	방콕에 소재한 고급 피트니스센터로 헬스장, 자쿠치, 수영장 등이 있다.
비고	영국 피트니스 태국지점으로 방콕 시내 6개, 치앙마이에 1개 소재하고 있다.

○ 피트니스 퍼스트 타일랜드(Fitness First Thailand)

도시명	방콕
주소	3rd-4th Floor, Sthorn Square Office Tower, 98 North Sathorn Road, Silom, Bangkrak, Bangkok, 10500
홈페이지	https://www.fitnessfirst.co.th/
소개	방콕에 소재한 고급 피트니스센터로 전국에 3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타이 컨트리 클럽(Thai Country Club)

도시명	차츄사오
주소	88 Tambon Pimpa Tambon Hom Sin, Amphoe Bang Pakong, Chang Wat Chachoengsao 24180
홈페이지	https://www.thaicountryclub.com/
소개	1996년에 지어진 골프장으로 방콕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18홀 골프장이다.

비고	- 전화번호: +66-(0)38-562-700 -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	--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19-01-01	태국에서 신정만 공휴일이며, 구정은 공식 공휴일이 아니다.
만불절	2019-02-19	태국어로는 완마카부차라고 불리우며,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개국기념일	2019-04-06	태국어로는 완짜끄리라고 불리우며, 현 짜끄리 왕조의 개국기념일이다.
개국기념일 대체휴일	2019-04-08	
송크란(태국 설날)	2019-04-13	매년 4.13~15이 태국 설날인 송크란이며, 13일과 14일이 각각 토, 일요일에 해당하여 16일은 대체 휴일로 휴무
근로자의날	2019-05-01	
권농일	2019-05-13	태국어로는 완똘몽곤이라 불리우며 일부 공무원만 휴무한다.
석가탄신일	2019-05-18	태국어로는 완위사가부차라고 불리우며 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이다.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2019-05-20	
석가모니 설법 기념일	2019-07-16	태국어로는 완와야싸나부차라고 불리우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불교 관련 기념일로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입안거일	2019-07-17	태국어로는 완카오판싸라고 불리우는 불교 관련 기념일로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국왕탄신일	2019-07-28	현 국왕인 라마 10세의 탄신일
국왕탄신일 대체휴일	2019-07-29	
어머니의 날	2019-08-12	전 국왕(라마 9세)인 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부인인 시리깃 왕비의 생일이기도 하다.
라마 9세 추모일	2019-10-13	전 국왕(라마 9세)인 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추모일
라마 9세 추모일 대체 휴일	2019-10-14	
쭈라롱콘 대왕 기념일	2019-10-23	라마 5세인 쭈라롱콘 대왕의 서거 기념일
아버지의 날	2019-12-05	전 국왕(라마 9세)인 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탄생일이자 태국 아버지의 날이다.
제헌절	2019-12-10	태국 헌법기념일이다.
송년일	2019-12-31	

<자료원 : officeholidays.com>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방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Unit 4101-4104, 41st Floor, Bhiraaj Tower at EmQuartie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10110 Thailand
- 전화번호: 66-2-035-1555 (*태국에서 전화 시 02-035-1555)
- 홈페이지: www.kotra.or.kr/bangkok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일반 택시로 이동: 일반택시 주차장은 입국하는 공항건물 1층(Ground Floor) 외부에 있다. 공항 외부 택시 승차장에서 무역관까지 대략 400~500밧(12.2~15.2달러) 정도의 요금이 예상된다. 일반택시 승차시 미터기 요금에 공항대기료(50밧), 고속도로 통행료(70~100밧)를 승객이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리무진 택시로 이동: 입국 공항 내에서 접수하고 외부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요금은 약 800~1100밧(24.3~33.5달러)이다.
 - 공항철도(Airport Rail Link)로 이동: 수완나품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MRT 수쿰윗 역에서 내려 BTS 프롬폰 역으로 환승할 수 있다. 단,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이 매우 혼잡하므로 짐을 들고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건물 도착 후
 - 엠쿼티어 글라스 쿼티어(Emquartier Glass Quatier) 건물에서 연결되는 비랏타워(Bhiraj Tower) 건물 M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41층으로 올라오면 된다.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란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